

碩士學位論文

國際麻藥類 확산에 따른 21세기
韓國麻藥政策에 관한 研究
- 麻藥密賣에 대한 統制政策을 중심으로 -

2004年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麻藥學科

麻藥政策專攻

裴 成 泰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조 성 권

國際麻藥類 확산에 따른 21세기
韓國麻藥政策에 관한 研究
- 麻藥密賣에 대한 統制政策을 중심으로 -

A Study on Korean Drug Policies toward the Growth of
International Drug Trafficking of the 21st Century
- A Focus on Control Policies of Drug Trafficking -

2004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 麻 藥 學 科
麻 藥 政 策 專 攻
裴 成 泰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조 성 권

國際麻藥類 확산에 따른 21세기
韓國麻藥政策에 관한 研究
- 麻藥密賣에 대한 統制政策을 중심으로 -

A Study on Korean Drug Policies toward the Growth of
International Drug Trafficking of the 21st Century
- A Focus on Control Policies of Drug Trafficking -

위 論文을 麻藥政策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 際 麻 藥 學 科

麻 藥 政 策 專 攻

裴 成 泰

裴成泰의 痲藥政策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4年 12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國 文 抄 錄

21세기 한국의 마약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 1980년대의 마약의 관심 비중에 비하면 1990년대 이후의 불법마약류 남용의 문제가 사회화 되고 전 세계의 불법마약 거래액만 5000억불로 추산되는 바 이는 전 세계의 무역거래량의 약9.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 공·항만의 차단정책에 대하여 개별적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대처해 나가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

제1장에서는 각국의 불법마약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대응의 공감을 인식하여 본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을 밝혔다.

제2장에서는 국제마약 밀매의 종류와 신종마약 암페타민류에 대한 설명과 그 마약생산지역에 대하여 논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제기구의 마약통제에 대한 정책과 협의안 등을 우리나라 마약정책에 관련한 부분만 논하였다. 그리고 미국, 일본, 유럽의 네덜란드와 영국의 마약정책에 대하여 비교하였으며 한국의 마약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개별적 특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제4장에서는 21세기 한국마약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우리나라의 마약 방어적 시스템으로서의 국제공조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과 마약생산지의 초기통제의 기능과 공·항만의 전담마약수사 강화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리고 마약학회와 마약학계 및 민간단체의 마약관련 정보수집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정책과, 그리고 외국인 마약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정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국내적 국제적 관계를 결합하여 볼 때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마약으로부터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하여서는 국민 전체의 공감과 의식이 뒤따라야 됨을 상기시켰다. 이에 정부의 성실한 노력과 예산상의 정책이 보장되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마약관련한 학문과 학회 그리고 일반 마약전문인의 절대적인 공조사회가 바람직함을 논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目 次

제1장 序 論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國際麻藥密賣의 種類와 主要마약 生産地帶	5
제1절 국제마약밀매의 종류	5
1. 대마(大麻)류	5
2. 아편(阿片, Opium Poppy) 류	10
3. 코카인(Cocaine) 류	14
4. 암페타민류 각성제(Amphetamine-Type Stimulants : ATS)	15
5. 신중 마약류의 실제	16
제2절 세계 마약 밀수동향 分析	24
1. 불법 아편 생산 및 밀거래 동향	24
2. 불법 코카인 생산 및 밀거래 동향	26
3. 불법 대마류 생산 및 밀거래 동향	27
4. 합성마약류 불법제조 및 밀거래 동향	28
제3절 마약생산지대별 마약밀매 및 유통실태	31
1.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	31
2. 황금의 초생달지대(Golden Crescent)	37
3. 코카인 삼각지대(Cocaine Triangle)	43
4. 필로폰의 삼각지대(White Triangle)	44
제3장 國際機構의 麻藥統制 실제	48
제1절 UN 마약류통제 정책	48

1. UN 마약류통제본부(UNDCP)의 정책	48
2. UN 마약위원회(UN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51
3. '88년 12월 유엔마약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s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52
제2절 다른 나라 마약통제정책 비교	58
1. 미국의 마약정책	58
2. 일본의 마약정책	60
3. 유럽의 마약정책	62
4. 캐나다의 마약정책	63
제3절 한국 마약정책의 기관별 실제	64
1. 검찰청	65
2. 국가정보원	67
3. 관세청	68
 제4장 21세기 한국 마약통제 정책의 새로운 方向	75
제1절 '국제공조 사무소' 설치 정책	57
제2절 마약생산지 초기 통제 정보시스템 구축	78
제3절 공·항만의 마약수사 강화 정책	85
제4절 마약학회 시민 정보실운영 정책	86
제5절 외국인 마약폐해 상담센터 운영 정책	87
 제5장 結論	88
 參考 文獻	92
 ABSTRACT	94

表 目 次

<표 2-1> 우리나라 대마류 적발량	10
<표 2-2> 신종마약류 우리나라 밀반입 량	17
<표 2-3> 세계 아편 생산량(추정)	25
<표 2-4> 코카인 세계 주요국 생산량(1995년~2001년)	27
<표 2-5> 메스암페타민 압수현황	29
<표 2-6> ATS(합성마약) 추정 생산량	30
<표 2-7> 황금의 초생달지대 & 인도네시아 마약류적발('98~2003년)	41
<표 2-8> 인도& 파키스탄 주변국가 적발실적	42
<표 2-9> 필리핀 마약류 검거량(2000년~2002년)	46
<표 3-1> 우리나라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응체제	65
<표 3-2> 2003년도 마약류사범 단속실적표	66
<표 3-3> 마약류사범단속(1996년~2003년까지)	66
<표 3-4> 우범자 입력 전산(마약조사과)	71
<표 3-5> 마약우범자 조회추적정보(일선세관)	72
<표 3-6>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	73
<표 4-1> 세계아편 총생산 비교(2000년~2003년)	79
<표 4-2> 코카인 국내 반입량 (1999년~2003년)	80
<표 4-3> 우리나라 마약류 적발량(1997년~2003년)	83
<표 4-4> 일본세관 마약류 적발량(1994년~2003년)	83
<표 4-5> 우리나라 외국인 밀수사범 적발(2003년 한해 현재)	84
<표 4-6> 밀수입 마약류 적출국(2002년)	84
<표 4-7> 세관별 단속실적(2003년)	85

사 진 목 차

〈사진 2-1〉 대마수지(Hashish)자료	8
〈사진 2-2〉 대마오일(Hashish Oil) 자료	9
〈사진 2-3〉 양귀비(楊貴妃) 자료	11
〈사진 2-4〉 아편(Opium Poppy) 자료	11
〈사진 2-5〉 주요 헤로인(Heroin) 생산지 자료	13
〈사진 2-6〉 코카인(Cocaine) 자료	14
〈사진 2-7〉 물 뿔(GHB) 자료	19
〈사진 2-8〉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	32
〈사진 2-9〉 황금의 초생달지대(Golden Crescent) 자료	38
〈사진 2-10〉 코카인 삼각지대(Cocaine Triangle) 자료	43
〈사진 2-11〉 필로폰의 삼각지대(White Triangle) 자료	45

제1장 序 論

제1절 연구목적

세계는 지금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면서 21세기 국제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경제적, 물리적 국경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사회 안전, 국민건강, 환경보호를 위한 세계 각 국의 국경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마약류 조직들도 국제화에 편승하여 국제적인 밀거래를 자행하고 있어 마약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류의 오·남용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국민건강과 건전한 국민정신을 해치며 더 나아가 국민경제의 혼란을 초래하여 결국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 범죄가 1988년을 전후하여 급속히 확산되었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은 일부계층의 과소비 풍조 및 퇴폐향락 심리가 되기도 하였다. 마약류의 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범죄를 양산하는 등 사회악으로 인식되고 그 심각성을 깨달아 1991년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IMF 사태로 대량실직, 부도, 경제적 몰락으로 좌절감에서 마약유희에 쉽게 빠져들어 2003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수가 총 7,546명으로 그중 마약사범은 1,211명, 향정사범은 4,727명, 대마사범은 1,608명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 추세에 있으나, 마약사범만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3년도 외국산 마약류 불법반입량은 2003년도 총 62건 92.4kg으로 2002년 251.3kg(56건) 대비 63.2%로 감소하였으나, 유럽이나 북미 등 선진국에서 상용되었던 엑스터시(MAMA), 야바(YABA), LSD가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적발되었는데 그 압수량은 2002년도 39,011정,

2003년도 4,314정으로 2001년도 3,767정 대비 대폭 증가하였다.¹⁾ 국내 마약류사범의 증가 추세는 '88년도에 3,939명으로 전년대비 급증하였다가 '89년도 이후 일시 감소세를 보여 오다가 '95년도부터 증가가세로 전환하여 '99년에 전년대비 26.8%나 증가한 10,589명이나 단속되는 등 2000년 이후 4년 연속으로 마약류사범 적발인원이 1만 명을 상회하는 등 마약남용 및 밀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²⁾

이러한 불법마약류 증가추세는 선진국 형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범죄수법도 날로 지능화, 교묘화, 첨단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인터넷 및 국제운송수단 발달과 함께 국제범죄로의 발전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약류 사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마약밀매(國際麻藥密賣) 유통의 통로를 자료에 의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마약류 밀매유통에 관한 루트를 사전 차단하고자, 마약밀매 유통(流通) 통제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마약류단속 정책의 시대적·세계적인 대응(對應) 기류의 정황을 신속히 보완(補完)하면서 21세기 마약류의 흐름을 간파하여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었다.

첫째, 국내와 국제(유럽, 남미 미주 등)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마약류의 개념이 새롭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 우리 사회에 마약의 해악(害惡) 의존성을 염두에 두는 마약의 종류를 다시 한번 개념 정의 및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른 마약사범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관리법과 대마초 또는 이에 유관한 신종마약의 사회적인 인식에 대하여 기존의 법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마약류의 신종발생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범의 검거와 통로를 중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마약류 사범에 대한 공급적 측면이 간과되고 있는 정책상의

1) 대검찰청, 『2003년도 마약류범죄백서』, p. 32.

2) 대검찰청, 상계서, p. 31.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밀매단속정책의 효과적 성격을 국제간의 협약과의 비교를 하는 점이다. 이에 따른 자료로서는 국제적인 협약의 법적 효력이 공급자와 수급자와의 관계에까지 밀접한 통제정책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밀매 유통로(流通路)로서 우리나라가 이용되고 있음과 신종마약의 유통통제의 정책에 간과되고 있다는 점을 보완 분석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마약류 범죄의 실태를 분석하여 마약류범죄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그 범위를 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마약류의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 마약개념 및 종류별 특성과, 신종마약의 개념과 종류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술하였으며, 국제마약생산 실태와 유통경로로서 세계적인 마약생산지인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루트와 황금의 초생달지대(Golden Crescent)의 루트, 백색의 삼각지대(White Triangle)루트, 멕시코 남미와 콜롬비아 및 에콰도르부터 밀매 조직적인 루트로부터 적발되는 지역과 나라별로 이동 루트를 연구하여 마약밀매 조직의 화학물질 이동과 마약의 밀매루트를 통제하여야 함을 강화하고자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국제기구의 마약통제의 실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첫째,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 단속에 있어 국제간의 대응상의 문제점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UNDCP 자료를 기초로 국제간의 마약생산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UN 마약류 통제본부(UNDCP) 정책의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UN 마약위원회와 1988년 12월 유엔마약협약의 실제와 문제점을 논하였고, 셋째, 다른 나라의 마약정책의 비교와 우리나라 마약정책의 핵심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21세기 우리나라 마약통제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서술하였는데, 제1절에서는 첫째, 국제간의 형사사범 공조체제 강화 방안, 둘째, 생산지 초기 통제의 우선강화 방안, 셋째, 마약원료물질 이동경로의 행정 강화 방안, 넷째, 관세행정의 관리강화 방안으로서 공항만의 수사 강화방안을 중점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여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국내 마약 통제정책의 단속강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결론을 맺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마약류범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국내외 유관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 조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분석의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국내에서의 마약류범죄에 대한 문헌고찰은 검찰, 경찰, 세관, 국가정보원, 형사정책연구원, 국내주재 외국 마약관련 기관 및 기타 유관 단체 등에서 발간한 각종 연구자료 등을 위주로 하였다.

해외에서의 마약류범죄에 대한 문헌고찰은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³⁾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마약청(DEA),⁴⁾ 미국세관(USCS), 미국범죄수사단(CID) 등의 각종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 밖에도 국내외 문헌, 연구논문, 정기·비정기 간행물 등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3)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 Anti-Dro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4) 미국마약청(DEA) :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제2장 國際麻藥密賣의 種類와 主要麻藥 生産地帶

제1절 국제마약밀매의 종류

1. 대마(大麻)류

1) 대마

대마는 마(麻) 또는 삼이라고 하며 세계 각지에서 서식하는 1년생 초본 섬유작물로서 잎과 꽃은 대마초(大麻草)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香辛料), 섬유는 삼베를 짜거나, 종자는 조미용(調味用)기름으로 쓰이는 가장 오래된 섬유작물이다.⁵⁾ 대마를 마리화나(Marihuana) 또는 카나비스(Cannabis)이라 하는데, 잎과 꽃에 함유되어 있는 400여 종 이상의 화학물질(카나비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두드러진 주성분을 약칭해서 THC(델타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 Delta-tetrahydrocannabinol)라 한다.⁶⁾

대마의 최고 기록은 B.C 2737년에 중국의 센농 황제시절 “목초서인” 중국의학개론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B.C 1,500년경 인도의 경전에 대마초를 행복의 근원 또는 웃음을 일으키는 약물이라 기록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와 아라비아에서도 “천국의 안내자“, “슬픔의 위안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일종의 환각식물의 일종으로서, 대마를 수증기에 찌거나 태워서 발생하는 증기를

5) 국가정보원, 『마약류 용어해설』, 2004, p. 12.

6) 국가정보원, 상계서, 2004, p. 14.

7) 대검찰청 마약부 『마약류 종류』, 인터넷 www.sppo.go.kr. pp. 1~2

8) 오오키고 오그케, 박희준, 『마약문화』, 서울 :정신세계사, 1991, p. 37. 고고학사, 『약물범죄비교 고찰』, 동경: 유비각, 1983, p. 79.

흡입하여 아픔을 완화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⁷⁾ 그 후 중동·이집트를 거쳐 19세기 초 미국에 전파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월남전이 한창이던 1956년 이후 전파되어 주한미군들과 인근 유흥업소 종사자, 악사, 가수들이 흡연을 시작으로 파급되었다.⁸⁾

대마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고원지대와 중국, 인도, 북아프리카, 중남미, 한국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세기 전부터 섬유나 천식, 두통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로서 재배되어왔다. 대마(大麻)의 주성분은 THC라는 환각물질인데 1g/10,000만으로도 환각상태를 일으킬 수 있어 THC를 많이 함유한 대마초일수록 인체에 미치는 해가 크며, 무덤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서 성장한 대마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중동, 멕시코, 미국 남서부 대마의 THC 성분이 한국 등 동북아산보다 20~60배정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대마 솟 나무에서는 매우 적은 수지(resin)를 함유하고 있어 도취(陶醉)효과가 낮지만, 암나무의 대마초에 꽃 부분에 더 많은 THC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대마초에는 보통 2-10%를 THC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특히 인도산의 인도대마초(*C. sativa* var. *indica*)에는 더욱 많이 들어있다.¹⁰⁾ 대마(大麻), 마(麻)라고도 불리고 삼은 재배역사가 가장 오래 된 작물 중에 하나로 섬유를 획득하기 위해 재배하는데, 러시아가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고, 인도, 루마니아, 중국, 헝가리, 폴란드, 터키 등이 주요 생산국이다.¹¹⁾

9) 이재상, 『형법총론』, 서울:박영사, 1966, p. 571.

1986년에는 마약법 등 약물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약물범죄로 득한 자금이나 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32호로 개정되었다.

10) THC 함량을 말하며 THC는 대마초에 함유된 성분 중 마취,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정식 명칭은 Delta-tetrahydrocannabinol 이다. 통상 대마 잎에는 1~3.5%, 해시시에는 2~10%, 대마유(해시시 오일)에는 20~63%의 THC가 함유되어 있으며 THC를 많이 함유한 대마초일수록 인체에 미치는 해가 크다.

11) THC 함량을 말하는 THC는 대마초에 함유된 성분 중 마취,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정식 명칭은 **Delta-tetrahydrocannabinol** 이다. 통상 대마 잎에는 1~3.5%, 해시시에는 2~10%, 대마유(해시시 오일)에는 20~63%의 THC가 함유되어 있으며 THC를 많이 함유한 대마초일수록 인체에 미치는 해가 크다.

이러한 대마초의 THC성분은 도취(陶醉) 또는 환각(幻覺)을 초래하여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변화와 망상, 흥분, 사고력의 저하로 운동신경에 장애를 일으키게 됨으로 1976년 4월 7일 우리나라에서는 대마관리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대마의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¹²⁾ 오래전부터 진통제, 경련, 진정제로 남용(濫用)되어 왔으며 해시시 오일(Hashish Oil, Cannabis Oil)은 해시시로부터 추출하기 때문에 용액을 마시는 방법으로도 남용되고, 이것이 20%에 이르는 고도의 농축된 약물(藥物)이다.¹³⁾

2) 대마수지(大麻樹脂)

대마수지(Cannabis Resin)는 성숙한 대마의 꽃대 부분과 상부의 잎에서 얻은 수지를 채취하여 제조한 것을 해시시라 한다. 해시시는 마리화나보다 6배 정도 효과가 강하고 가격도 비싸며 주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통용된다. 해시시(Hashish)는 낱것으로 먹기도 하고 차나 커피에 녹여 마시기도 하지만 연기로 흡입할 때 가장 효과가 크다.

대마수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취하지만 중동(中東)국가 등 해시시 생산지역 원주민들은 가죽 옷을 걸치고 미성숙한 대마 밭을 마구 뛰어다니면서 잎과 꽃등에 달려 있는 대마수지를 옷에 묻힌 다음 이를 긁어서 1kg의 해시시를 제조하기 위해 30kg의 대마초를 가공 처리하게 된다.

12) 이재상, 『형법총론』, 서울:박영사, 1996, p. 571.

1986년에는 마약법 등 약물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약물범죄로 취득한 자금이나 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는 구정을 두었고,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32호로 개정되었다.

13) David F. Musto, The American Disease Origin of Narcotic Control, (N.Y.: Yale Univ, press, 1973), pp.98-110.



〈사진 2-1〉 대마수지(Hashish)자료

이러한 해시시의 주요 생산지는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레바논 등 중동지역이며 그 외에 동남아, 인도, 멕시코, 아프리카, 북미지역에서도 생산된다. 해시시에는 보통 2%~10%의 THC가 함유되어 있으며 보통 연갈색, 갈색, 암갈색, 흑색 등 다양하며 덩어리 상태 또는 분말 상태로 밀수된다.

3) 대마오일(Hashish Oil 大麻油)

대마유(大麻油 Hashish Oil, Cannabis Oil)는 대마잎, 해시시 등을 아세톤, 알코올, 에테르와 섞은 후 반복적으로 여과·증유하여 추출해낸 고농축 오일을 말한다. 대마오일은 액상 타르 형태로 썩는 듯한 독한 냄새가 나고, 대부분 검은색이나 경우에 따라 진녹색, 황금색, 적갈색을 띄기도 한다. 20~63%의 THC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대마초보다 20배 이상 많은 양이다. 해시시 오일(油)은 반복적인 증류(蒸溜)공정(工程)을 거쳐서 대마초 자체 또는 부스러기를 추출하기 때문에 THC 함량이 20%에 이르는 아주 고도로 농축(濃縮)된 칸나비스와 관련된 마약이다. 대략 1kg의 칸나비스 오일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약 3kg~6kg의 대마수지(Hashish)가 소요되며 대마초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한다.¹⁴⁾

14) 국가정보원, 『마약류 용어해설』, 2004, p. 13.



〈사진 2-2〉 대마오일(Hashish Oil) 자료

자마이카 등 깊은 산속에서는 임시로 만든 증류기를 설치하여 55갤런들이 통속에 대마초를 아세톤, 알콜, 에테르, 등과 섞어 넣은 다음 3일간 계속 가열하여 해시시 오일을 증류해 낸다. 이것은 담배 한 개 피에 해시시 오일 1~2방울을 떨어뜨리면 대마초 담배 한 개 피의 흡연효과를 낸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시시(Hashish)와 해시시 오일(Hashish Oil)의 수요는 감소되고 있다.

대마(大麻)는 세계적으로 가장 남용되고 밀거래 되는 마약이다. 2000년, 2001년도의 두 해가 마약 남용 수준이 가장 증가한 종류가 대마(大麻)마약이다. 소비단위로 보면 대마초와 대마수지 적발량이 전 세계 마약 적발량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마초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고 대마수지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다.¹⁵⁾

대마초는 밀거래가 대부분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소비는 북미, 카리브해, 남아시아, 남아프리카 등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다. 대마수지 최대 생산지인 모로코에서는 대마수지가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다. 2002년에는 멕시코에서 1,633톤, 미국에서 591톤을 적발하였다. 대마수지의 소비단위를 기준으로 2002년 스페인이 564.8톤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이탈리아 28.6톤 루마니아에서 2001년 13.8톤과 2002년 39kg을 적발하였다. 아시아의 파키스탄이 85.1톤, 이란 64.1톤의 밀매 적발량이 증가하였고, 아프카니스

15) 관세청, 『2003년도 마약류밀수동향』, 서울: 협동문고, 2004, p. 26.

탄에서 50.3톤, 2001년 308kg 적발되었으며, 레바논에서는 2002년에는 감소된 28.7톤을 적발하는 등 2002년도의 전 세계 대마초 적발량이 2001년 4,700톤에 비해 18%감소한 3,800톤이며, 적발 분포를 살펴보면 아메리카 69.7%, 아프리카 18.9%, 아시아 7.1%, 유럽 4.1%, 오세아니아 0.2% 순이다.¹⁶⁾

우리나라는 <표 2-1> 대마 적발량에 의하면 2002년 대마초가 137,998g 적발했으나 2003년에는 14,557g 줄었다. 이는 단속의 강화 영향이 크다고 본다.

<표 2-1> 우리나라 대마류 적발량 (단위: g , 백만원)

연도별 마약류	2002년			2003년			전년대비증감(%)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대마초	22	137,998	1,381	20	14,557	145	-2	-90	-90
대마수지	2	410	41	2	92	9	0	+78	+78

자료: 관세청, 『2003년도 마약류밀수동향』, p. 132.

2. 아편(阿片, Opium Poppy) 류

1) 아편

생아편은 일명 양귀비(楊貴妃)라고 불리며 온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양귀비속 식물로서 앵속(罌粟)의 설익은 열매에 흠집을 내어 우유 빛의 수액을 추출하고 채취된 수액을 자연상태에서 건조시켜 생성되는 것을 생아편이라 하며 천연마약류로 분류된다. 양귀비는 기원전 300년경부터 지중해 연안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기원전 5,00년경 이라크지방에서 아편에 관한 지식을 돌에 새겨 전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며,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4세기경 양귀비에서 추출한 액체를 질병치료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6) 관세청, 상계서, p. 29.



<사진 2-3> 양귀비(楊貴妃) 자료



<사진 2-4> 아편(Opium Poppy) 자료

그 후 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지역과 멕시코, 콜롬비아 등 중남미지역으로 퍼져나갔다.¹⁷⁾

오늘날에는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와 황금의 초생달 지대(Golden Crescent)를 중심으로 세계 전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2002년 전 세계 양귀비 재배지는 180,272헥타르이며, 아편 생산량은 약 4,500톤으로 그 중 미얀마 동부 살윈강 동쪽 산악지대인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에서 약 949톤이 생산되었고, 미얀마의 태국 인접 국경지역, 라오스의 태국 인접지역과 황금의 초생달지대 (Golden Crescent)에서 약 3,400톤을 생산하였다.¹⁸⁾

아편은 약 20종의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으며, 주요 알칼로이드로는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파파베린, 노스카핀(나르코틴) 등이 있다. 아편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진정·진통·진경(鎮痙)·진해(鎮海)·지사(止瀉)·최면제 및 마취보조제로 쓰이고 있으나 만성중독시 오심·구토·두통·현기증·변비·피부병·배뇨장애·호흡억제·혼수 등의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약물로서, 1909년 상하이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 밖의 나라들과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아편흡연을 근절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을 체결하였다.¹⁹⁾

17) 조은석 외2, 『마약류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p. 33.

18) 대검찰청, 『2003년도 마약류범죄백서』, pp. 28~29.

19) 대검찰청 마약부, 『마약류 종류 :마약』, pp. 1~3. www.sppo.go.kr/drug/drug/drug-1.htm

2) 모르핀(Morphine)

모르핀은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화학반응을 거쳐 추출한 양질의 페난트렌알칼로이드(phenanthren Alkaloid)로서 아편에 9~14%의 모르핀을 함유되어있는데 이를 1805년 독일의 약사 “ f.w.a 제르튀르너”가 아편에서 모르핀을 추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아편에 약 10%의 농도로 함유된 모르핀은 통증완화에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약리작용(藥理作用) 때문에 말기 암환자나 외과수술, 화상으로 인한 고통을 진통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의약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모르핀은 코데인(Codeine)제조를 위하여 주 원료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마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헤로인(Heroin)의 불법제조 원료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모르핀의 주된 약리작용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함으로써 진통작용(鎮痛作用), 호흡억제(呼吸抑制), 위(胃)관 운동저하 및 신체적 의존성(依存性)을 일으키고, 중독 시에는 구토·발한·발열·설사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진통효과는 수면(睡眠)을 야기시키지 않고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중독 시에는 심한 금단증상을 일으키는 약물이다.²⁰⁾ 모르핀은 정제상태로 사용되며, 불법적인 것은 분말·캡슐·결정상태로 사용된다. 모든 마약 중에서도 모르핀은 진통제로서 가장 의학적(醫學的) 가치를 가지고 있다.

3) 헤로인(Heroin)

헤로인은 양귀비 열매에서 채취한 생아편(모르핀)에 수산화칼륨 및 소석회 염화암모니아(Acetyl Chlorid) 등을 첨가하고 혼합, 침전, 여과과정을 거친 모르핀베이스를 추출하고 무수초산(Acetic Anhydride)과 활성탄, 염산, 에테르 등을 화학처리 하여 만든 “마약의 향제인” 헤로인이 1874년에 최초로 탄생하게 되는 천연마약이다.²¹⁾

20) 대검찰청 마약부, 『마약류 종류 :마약』, pp. 1~4. www.sppo.go.kr/drug/drug/drug-1.htm

21) Gerald. F. Uelmen and Victor G. Haddox, Drug Abuse and the Law Sourcebook, (New York: Clark Boardman Company, 1988), pp. 2-16. 국가정보원, 『마약류 용어해설』, 2004, p. 119.

헤로인은 본래 아편제의 진통효과는 유지하되 의존성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1898년 독일의 바이엘 제약회사에서 개발되었다. 헤로인은 모르핀의 10배 이상의 부작용 및 유해성이 여타 마약보다 크고, 쉽게 의존성이 생겨 만성중독에 빠지게 되고 사용을 중단하면 금단증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1914년 '해리슨 마약법'이 미국에서 제정되면서부터 세계의 약전에서 삭제되었고, 1940년대 후반에 국제적으로 그 제조나 수입·사용을 금지시키고 헤로인 약물을 본격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²²⁾



<사진 2-5> 주요 헤로인(Heroin) 생산지 자료

헤로인의 색깔은 생산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유럽이나 동양의 헤로인은 비교적 밝은 색깔을 띠고 있는데, 이는 생산된 헤로인의 우수한 품질과 고도의 정제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라 하며, 멕시코산(産)의 헤로인은 좀 더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데 이는 화학적인 처리과정이 완전치 못한 때문이고, 반면에 극동지방의 것은 적색, 회색 또는 백색을 띠고 있어 우수품질로 분류한다. 헤로인은 1900년대 초까지는 의학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독일의 바이엘 약품회사가 1898년에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하면서 의약적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약물로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위해성이 강한 약물이다.

헤로인의 주 생산지는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로 불리는 태국, 라오스, 미얀마 3국의 접경 산악지역이다. 이것은 아편생산의 최적 기후와 자연조건을 갖춘 천혜(天惠)의 요지(要地) 때문이다. 헤로인 중독시 불안, 불면,

22) 국가정보원, 『마약류 용어해설』, 2004, p. 119.

고민, 침울 또는 발양(發揚) 등의 정신증세와 함께 구토, 발한, 발열 설사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식용부진, 맥박급박, 정신지둔(精神遲鈍)등 심신이 쇠약해져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고,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마비로 사망하게 되고, 헤로인은 소량을 연용할 경우 쉽게 의존성이 생기고, 만성중독에 쉽게 빠지면서 내성이 생겨 점진적으로 증량을 갈구하는 약리적 작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²³⁾

3. 코카인(Cocaine) 류

남미의 안데스산맥 고지대에서자라는 코카나무 잎에서 코카잎에 함유되어 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을 1860년 “알베르르트니만” 이 최초로 알칼로이드를 추출하여 분리한 것이 코카인 마약이다.

코카인은 흰색가루 형태로 제조되며 주사기나 빨대 등을 이용 코를 통해서 흡입· 흡수하므로 비 점막을 통해 지각신경 말단에 작용함으로써 통증과 미각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약리적 작용을 수술이나 진찰할 때 국부마취제로 1862년부터 사용되었다.



〈사진 2-6〉 코카인(Cocaine) 자료

코카나무 속에는 약 100여종의 식물이 있지만 몇몇 종자만이 코카인을 얻기 위해 안데스산맥(해발고도 1,000-2,000m) 및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인

23) 대검찰청마약부, 『마약류 종류 :마약』, pp. 4-5. www.sppo.go.kr/drug/drug/drug-1.htm

도네시아, 스리랑카, 타이완 등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으나, 2003년도 세계 최대 생산국은 콜롬비아로 전 세계 코카인의 3/4을 차지하며 제조량은 연간 800톤으로 그 중 314톤이 압수되는 생산지이다.²⁴⁾ 코카인 남용시 영양장애와 우울증, 불안감, 수면장애, 만성피로, 정신혼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만 습관성 중독시에는 벌레나 작은 동물이 몸 위를 기어다닌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체감현상이 일어나 자기 몸을 쥐어뜯어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급성 중독 시에는 현기증, 안면창백, 동공산란 등 명정상태에 빠지게 되고, 더욱 심해지면 정신착란, 환청, 실신증상이 나타나면서 심장마비 및 호흡곤란(呼吸困難) 등을 야기하게 된다.²⁵⁾

코카인 남용의 확산 요인은 헤로인 남용시 주사기를 돌아가면서 맞던 관습으로 에이즈가 확산되는 요인이 있으나, 코카인의 경우 코로 흡입·흡수하기 때문에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는 코카인에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코카인 남용이 급증되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다.

4. 암페타민류 각성제(Amphetamine-Type Stimulants : ATS)

환각제(幻覺劑, Stimulant, Pep Pill)란 중추신경흥분제에 해당하는 암페타민(Amphetamine)류의 메스암페타민은 염산에페드린 (Ephedrine Hydrochloride)을 원료로 합성한 암페타민계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메스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교수인 “나카이 나가요시” 박사가 한방에서 천식약재로 쓰이는 마황에서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통상 미국에서는 스피드(Speed, 액체형태) 또는 아이스(Ice, 고체형태), 일본에서는 각성제(히로뽕), 필리핀에서는 샤부(Shabu), 대만에서는 아미타민이라고

24) 대검찰청, 『2003년도 마약류범죄백서』, p. 30.

25) R. De. Alarcon, “The Spread of Heroin in a Community”, (U.N. Bulletin of Narcotics, 1989), pp. 17-22.

하며, 국내에서는 필로폰, 히로뽕, 백색의 공포, 공포의 백색가루, 악마의 가루 등으로 불린다. 마약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백색의 황금,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등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메스암페타민을 주로 중국, 필리핀, 태국, 동아시아 및 유럽, 미주지역에서 최근 (1990~2001년) 연 평균 500톤 이상이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공급루트로는 한·중간 마약밀거래조직인 중국 ‘삼합회’, 일본 ‘야큐자’, 대만 ‘죽련방’ 조직 등에 의해서 일본, 대만, 한국, 등 동북아 및 미주, 유럽 등지로 밀반입되어 소비되고 있다.²⁶⁾

분말형 메스암페타민은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생산·소비되는데, 복용하게 되면 놀라운 만큼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를 인간의 에너지를 정상보다 훨씬 크고 신속하게 방출토록 하는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호르몬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되어, 만족감·흥분·불면증·민감성, 심리적 불안 등이 나타나거나 누구에게 감시 받는다는 편집증적 망상을 갖게 되어 주위 사람을 의심하고 때로는 살인까지 저지른 무서운 마약으로 동남아 지역 내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5. 신종 마약류의 실제

신종마약류의 용어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다만 새롭게 생성되었거나 과거에 있을지라도 남용사례가 거의 없다가 최근 들어 널리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로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사용자가 의존성·금단증상을 체험하게 되는 약물 또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미한다.

26) 국가정보원, 『마약류 용어해설』, 2004, pp. 36~38.

<표 2-2> 신종마약류 우리나라 밀반입 량

(단위 : 정)

구분 연도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야 바	태 국	0	8,010	2,018	0	380
	러시아	0	0	0	38,637	0
엑스터시 (MDMA)	캐나다	0	0	0	549	745
	미국	0	539	545	32	289
	네덜란드	0	100	0	54	0
	태 국	0	0	890	660	0
	중 국	0	0	0	0	200
L S D	네덜란드	0	190	0	0	0
	캐나다	0	0	0	0	900
합 계		0	8,839	3,453	39,932	4,314

자료: 대검찰청, 『2003년도 마약류범죄백서』, 2004. 4. p. 118.

1) 엑스터시류 (Ecstasy)

1999년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마약으로 화학적 MDMA (Methylenedioxy Methamphetamine)으로 통칭되는 암페타민계 유기화학물질이다. 1914년 독일의 제약회사에서 엑스터시(Ecstasy)를 합성에 성공하여, 식욕억제제로 사용하다가 효능을 인정받지 못해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1986년 지중해 섬에서 관광객들이 댄스파티에 사용한 이래 1987년 영국의 레ιβ 파티를 계기로 유럽·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학생 및 젊은 층에서 파티용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메스암페타민의 가격에 비해 저렴하고, 알약형태로 되어 있어 복용 방법이 쉽고, 환각작용은 3배나 강하며 구매가 용이하기 때문이다.²⁷⁾

엑스터시(Ecstasy, MDMA)의 경우 80% 이상이 네덜란드에서 생산(연간 1,000만정)되어 벨기에 등 유럽전지역, 호주, 미주, 및 한국 등 동남아지역에 공급되는 형태로는 백색분말·캡슐·정제 등 다양한 모양으로 밀거래 되는데, 환

27) 국가정보원, 『마약류 용어해설』, 2004, pp. 76~77.

각 · 흥분의 효과는 알약(1회 100~150mg)을 구강투여 후 30~60분에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통상 2~3시간 최대 6시간 지속된다. 이는 히로뽕보다 3~4배 강하여 젊은 층에서 파티용으로 아담, 캔디, 도리도리 엑스터시(XTC)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며 인기를 끄는 이유는 밤 세워 춤을 추는데 안성맞춤의 약이기 때문이다.²⁸⁾ 최근 해상 수입화물을 이용한 대량의 엑스터시를 밀수하는 수법은 줄어들고 있으나 소량의 엑스터시를 여행자 휴대품, 신체 및 국제우편 특급소포에 은닉하여 밀반입하는 수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주류를 이루었던 말레이시아인 운반책이 줄어든 반면에 일본 · 싱가포르 · 홍콩인 등이 자주 검거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서유럽 국가가 주요 공급처이며,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등이 엑스터시 주요 적발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야바 (YABA)

세계적 마약밀매조직 “쿤사”가 개발한 야바는 태국에서는 말처럼 힘이 솟고 발기에 좋은 약 이라고 해서 Hores Medicin으로 통용되고, 대만에서는 약마(藥馬, 원기나는약)라고도 불리운다. 야바(YABA)는 히로뽕 20~30%에 카페인과 코테인 등을 혼합한 것으로, 한번 복용하면 3일간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환각효과와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다. 기존 히로뽕과 달리 노란색, 붉은색을 띠고 있고 여러 캡슐형태로 변형하거나 의약품으로 위장하여 운반하거나 소포로 배달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일본 · 호주 등에서 국제 우편물을 이용 밀거래 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캡슐 1알(0.2g)의 실거래 가격이 약 2만원선으로 저렴하여 급속히 남용되고 있다.

3) 블랙 메스암페타민

28) 전대양, “신종마약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P. 3.

백색 메스암페타민을 분말형태로 만든 후 검정색깔로 전환하기 위해 활성탄(Activated Carbon)과 혼합 또는 검정색깔의 안료를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단지 색깔만 바꾼 블랙 메스암페타민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4) 물 뽕(GHB): 파티마약

물뽕(Gamma Hydroxy Butyrate: GHB)은 뷰티산계 유기화합물질로 FDA가 공식적으로 부작용을 인정하고 시판을 금지하기 전에는 건강식품 취급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었다. 시판을 금지한 이유는 GHB가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광범위한 약리학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진정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용량에서 GHB는 불안을 해소시키고 이완시키지만 용량을 증가시키면 잠을 자게하고 최후에는 혼수상태나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는 성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데이트 강간약물(Date-Rape Drug)로 불리기도 한다.



〈사진 2-7〉 물 뽕(GHB) 자료

GHB는 백색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로서 환각, 수면, 진정의 효과를 야기한다. 경우에 따라 뇌사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유럽 및 미주에서 주로 생산된다. 무색무취의 GHB는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 타서 마시게 되면 10~15분 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4시간 지속된다. GHB의 남용으로 혼수상태나 발작이 발생하며 메스암페타민과 함께 사용될 때 발작의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견잡을 수 없이 급속히 확산되어 의식을 잃을 수 있게 되고 남용 후 발생한 일을 대해서 기억할 수 없으며, 24시간 이내에 약물 성분이 인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닌 약물로써 제44차 유엔마약위원회(2001.3.20)에서 향정마약류로 분류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마약류로 규정되었다.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 환각제 엑스터시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혼합한 “섹스터시” 복용이 청소년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USA 투데이 인터넷판에 따르면, 당초 영국과 호주 젊은이들에게 한때 유행했던 섹스터시는 약 1년 전부터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의 파티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미 마약청(DEA)은 이 같은 첩보를 접하고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섹스터시 이외에도 각종 마약 칵테일이 성행하고 있고, 심지어 6개의 마약을 섞은 칵테일한 마약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섹스터시는 밤 세워 춤을 추고 마라톤 섹스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청소년 파티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 마약 중독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의사들은 섹스터시의 부작용으로 심장질환 유발과 장시간 발기상태 지속으로 인한 해면조직 손상 등을 꼽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부작용 사례가 이미 많이 나타났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워싱턴 주립대학 사회보건학과의 마약 중독 전문가 앨런 실버만은 젊은이들이 섹스타시의 인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밝히고 그들은 섹스타시를 만들기 위해 이웃집에서 비아그라를 훔치기도 한다.

5) 상주청 (常駐靑)

펜플루라민(Fenfluramine)은 중국에서는 의약품으로 취급되나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다. 흥분제의 일종으로 비만·우울증·자폐증의 치료

제로 사용되거나 남용(濫用)시에는 망상·환각 유발 및 폭력성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만성적으로 펜플루라민을 투약하면 정신증을 악화시키고 졸음·설사·구강건조·어지러움·혼미·두통·기분향상·우울·신경과민·긴장·피로·초조 등을 유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살빼는 약'으로 알려져 상주청, 분불납명편, 안비납동편 등의 상품명으로 거래된다.

6) 옥시코돈(Oxycodone)

데바인으로부터 합성한 진통제로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진통작용을 하며 강한 중독성이 있다. 남용(濫用)시에는 보통 눈동자가 수축되고 분별력을 잃으며, 졸립고 입술이 타며 호흡이 느려지는 증상 등을 보인다. 경구투여 하거나 물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정맥주사로 투여한다.

7) 야우토후완(Yao tou wan ; 요두환搖斗丸)

야우토후완(Yao tou wan ; 요두환搖斗丸)은 엑스터시의 중국어 명칭, 알약(丸) 형태로 병 속에 넣어서 유통되고 색깔은 약의 효능에 따라 3색인 분홍·파랑·흰색으로 구분되며 환각성은 흰색이 가장 약하고 분홍색이 가장 강하다. 가격은 약의 농도에 따라 다른데 환각상태가 약한 것은 대개 200-300위안(US\$30~40)에 유통되고 있으며 농도가 높은 것은 800위안(US\$100)에 거래된다.

음용방법은 물이나 술에 타서 복용하거나 알약의 상태로 입에 넣고 음료수 등과 함께 복용하며, 복용 후 5~10분 정도 경과하면 환각현상이 나타나 동공이 약간 풀리고 눈의 초점이 흐려지며 음주 시에는 갈증이 느껴져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된다. 야오토후완은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지역에서 생산하여 중국으로 밀수입한 후, 중국 내 조직이 다시 대도시의 유흥업소로 공급한다.

8) 케타민(Ketamine)

케타민(Ketamine)은 주로 사람 및 동물의 마취제로 사용된다. 일반 정맥 마취주사제와 달리 중추신경계의 특정부위에 작용하여 탁월한 진통작용을 나타내나 약기운이 사라지면서 환각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코로 흡입 또는 술에 타서 마시거나 마리화나와 함께 흡연한다. 환각제인 LSD 보다 강한 환각효과를 나타내며 약 1시간 정도 지속된다. 10대들이 파티장에서 엑스터시 대용으로 주로 사용하며 남용인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9) 펜시딜(Phensedyl)

펜시딜은 최근 마약성분인 “코데인”이 함유된 감기약인 펜시딜(Phensedyl)로서 질량분석기(GC/MSD) 측정 결과 마약법상의 규제대상 물질인 코데인(Codeine)이 0.12% 검출되었다. 진해작용으로 감기약 처방에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엑스터시류의 위험 특성은 약물을 경험한 자가 그 약효가 떨어졌을 때의 불쾌감에서 도피하고 싶다는 기분에서 이를 더 남용하게 된다는 점이다.²⁹⁾

10) 디아제팜(Diazepam)

디아제팜은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로 주로 불안 치료제로 사용되며 알코올 중독이나 근육경련 치료에 사용되기도 한다. 디아제팜을 장기간 복용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고 졸음, 피로, 운동실조(運動失調, 근육에 이상이 없는 데도 각 근육간의 조화장애로 인해 일정한 운동을 할 수 없는 증상), 근육경련, 수면부족, 감정격화, 정신착란,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11) 살빼는 약

태국산 살빼는 약은 디아제팜이 주성분이며, 중국산은 펜플루라민이 들어

29) California Department of Alcohol and Drug Programs, Five Year Masterplan to Reduce Drug and Alcohol Abuse, 1998, pp. 49-60. 정용원,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소고”, 검찰청, 1990. 1, pp. 49-59.

있는 것으로 에페드린 등 환각물질이 주성분이다. 이 약들은 식욕억제, 최면, 진정효과가 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태국산을 국내에 들어와 모 화장품회사가 “요요”라는 신종 약품까지 개발해 판매해왔으나 복용을 중단하면 살이 배로 쪼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살빼는 약’으로 통하는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은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일본, 싱가포르등 주변국뿐 아니라 국내에도 무더기로 반입되고 있다.

이 약은 환각, 초조함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 다량 복용할 경우 금단증상과 함께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기납명편’, ‘안비납동편’, 감비필타(별명: 패씨감비편) 등 다양한 이름의 중국산이 밀반입 유통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동 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플루라민(Fenfluramine)과 암페프라몬(Amfepamine)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기타

기타 환각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누바인, 지페프롤, 텍스트로메트로판제제, 날부핀, 환각작용 버섯, LSD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감기약이나 신경안정제 등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면 성인 남용자들도 이들 대체약물을 활용한다고 한다.

제2절 세계 마약 밀수동향 분석

1. 불법 아편 생산 및 밀거래 동향

2002년도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약 2억명이 불법 마약류를 남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대마 남용자는 1억 6,300만명, 암페타민류 남용자 3,400만명, 엑스터시 남용자 800만명, 코카인 남용자 1,400만명, 아편류 남용자 1,500만명 (이중 헤로인 남용자는 1,0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³⁰⁾

UNODC에 의하면 전 세계 양귀비재배지는 전년대비 144,294헥타르에서 21% 증가한 180,272헥타르이며, 아편생산량은 전년대비 181%가 증가한 4,500톤으로 황금의 초생달지대에서 약 3,400여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2년 전 세계 헤로인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290톤이 증가한 약 450톤으로 추정하고 압수량은 약 53.3톤으로 보고 있다.

2002년도 전 세계 아편 압수량은 2001년 103톤보다 약 2%가 감소한 53.3톤으로 아시아지역이 차지하는 압수량 비율은 전년대비 6.3% 줄어든 52.5%이고, 유럽도 5%가 감소한 28.1%이다. 아메리카지역은 특히 북미지역의 압수량 급증으로 인해 전년대비 10.6% 늘어난 18.1%이고, 2002년도 헤로인 최대 압수국은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압수량이 9.3톤인데 이는 2001년 대비 감소한 수치이다.³¹⁾

30) 대검찰청, 「2003년도 마약류범죄백서」, p. 28.

31) 대검찰청, 상계서, pp. 37~38.

<표 2-3> 세계 아편 생산량 (추정)

(단위 : 톤)

연도별 국가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황금 의 삼각 지대	미얀마	1,760	1,676	1,303	895	1,085	1,097	10,474	810
	라오스	140	147	124	124	167	134	112	120
	태국	5	4	8	8	6	6	507	18.1
황금의 초생달 지대	아프카 니스탄	2,248	2,804	2,693	4,565	3,276	185	17,300	3,400
	파키스탄	24	24	26	9	8	5	207	3.4
	이란	연간 35 ~ 75톤							
남미	콜롬비아	67	90	100	88	88	(30)	19,157	-
	멕시코	54	46	60	43	21	(26)	-	-
	베트남	9	2	2	2	-	-	2.6	2.1

자료: 대검찰청, 『2003년도 마약류범죄백서』, 2003. p.44. 참고, 관세청, 『2003년도 마약류밀수동향』, 2004. 7. p.165. 참조하여 재인용. ()안은 추정수치임

황금의 초생달지대에서 2002년도 양귀비 재배면적이 74,722헥타르이고, 아편생산량은 3,405톤이며,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2002년 양귀비 재배면적은 2001년 보다 27,000헥타르가 줄어든 96,150헥타르로 아편생산량은 950톤에 이른다.³²⁾

2002년 전 세계 아편 생산의 97%를 4개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76%, 미얀마 18%, 라오스 2%, 콜롬비아 1% 나머지 는 멕시코,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의 차지이다.³³⁾ 2003년도 생아편 평균 산지가격을 살펴보면 아프카니스탄의 경우 2002년과 양귀비 재배지는 622헥타르로 전년대비 275헥타르로 감소하였으나 아편 생산량은 전년과 동일한 5톤으로 분석되었다.³⁴⁾ 이란은 70년대 후반 세계 최대 아편생산국이었으나 지난 20여 년간 강력한 단속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아편생산이 거의 미미해지고 아편생산국이 아닌 경유

32) 대검찰청, 상계서, pp. 38-44.

33) 관세청, 『2003년도 마약류밀수동향』, 2004. 7. p. 169.

34) 관세청, 상계서, 2004. 7. p. 169.

국으로 재분류되어 있으나, 2003년 현재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유럽 및 러시아로 향하는 헤로인 최대 루트로 이용되고 있고, 2002년 이란에서 압수된 아편량은 72.8톤으로 전 세계 아편 압수량의 약 80%에 해당하고 더불어 헤로인 압수량은 3.9톤에 이른다. 반면에 미얀마의 경우 2002년 kg당 평균 산지가격이 2001년 대비 24% 하락한 115\$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130\$로 가격 상승하였으며, 라오스의 경우 2002년 kg당 평균산지가격은 2001년 대비 26%에서 160\$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가격형성으로 불법 아편류가 증산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 불법 코카인 생산 및 밀거래 동향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은 연간 약 800~1,000톤으로 2002년도 코카목 재배면적은 173,100헥타르로 코카잎 생산량이 294,400톤으로 보아 800톤의 코카인이 제조될 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고, 2002년도 전 세계의 코카목 경작면적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콜롬비아 59%, 페루 27%, 볼리비아 14%를 차지하고 있다.³⁵⁾

콜롬비아의 경우 2002년도에 102,000헥타르의 재배지에서 코카잎 222,100톤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의 3/4을 차지하는 580톤을 생산하여 해상과 항공기를 이용 카리브 해(海)를 통해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로 밀반출되고 있다. 콜롬비아와 페루에 이어 세계 3위인 볼리비아의 주요 코카 경작지인 샤파레(Chapare)와 최대 재배지인 융가스(Yungas)에서 2002년 재배면적이 24,400헥타르에서 약 60톤을 생산하였는데 그 중 코카베이스 압수량은 4.7톤, 코카인 압수량은 5.1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80 ~ ‘90년대 세계 최대의 코카잎 재배국인 페루는 2001년도 재배면적은

35) 대검찰청, 『2003년도 마약류범죄백서』, p. 51 참고. 관세청, 『2003년도 마약류밀수동향』, p. 25 참고.

46,200헥타르에 비해 1% 증가한 46,700헥타르로 추산되고 있고 코카인 생산량은 2001년 49,300톤에 비하여 3,200톤이 증가한 2002년도의 생산량은 52,500톤이다. 페루에서 생산되는 코카인 대부분은 콜롬비아로 수출되어 콜롬비아에서 코카인으로 정제 가공된 후 각국으로 밀반출 되다가 최근 콜롬비아국(國)의 마약퇴치정책 인하여, 페루내 밀매조직이 직접 코카인을 정제하기 시작하여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및 볼리비아 등을 경유하여 세계 각국으로 밀반출되고 있는 점이다.

<표 2-4> 코카인 세계 주요국 생산량 (1995년~2002년) (단위 : 톤)

연도별 국가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볼리비아	75,100	70,100	52,900	22,800	13,400	20,200	19,800
콜롬비아	108,900	129,500	165,900	261,100	266,200	236,000	222,100
페 루	174,700	130,600	95,600	69,200	46,200	49,300	52,500

자료: 대검찰청, 『2003년도 마약류범죄백서』, 2004, P. 50.

볼리비아는 2002년 라파즈의 Yange지역 13,800헥타르의 코카목이 재배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2002년도 코카인 생산량은 19,800톤이다.³⁶⁾

3. 불법 대마류 생산 및 밀거래 동향

대마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남용되고 밀거래된 마약으로 주로 밀거래되는 나라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2002년도 전 세계 대마초의 적발량은

36) 관세청, 『2003년도 마약류밀수동향』, 2004. 7. pp. 50~53. 대검찰청, 『2003년도 마약류범죄백서』, pp. 24~26.

2001년 4,700톤에 비해 18% 감소한 3,800톤이다. 대마초 적발은 전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으나 적발분포는 아메리카 69.7%, 아프리카 18.9%, 아시아 7.1%, 오세아니아 0.2% 순으로 대마수지 최대 생산국인은 모로코와 멕시코가 2002년도에는 대마수지 적발량이 1,633톤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그 다음으로 미국이 591톤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가 506톤을 적발하는 등 날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마수지 밀거래는 유럽과 아시아에 집중되어 200년 1,039톤 적발로 2001년 적발량과 비교하여 15% 증가하였으나, 소비단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2년도에 스페인 564.8톤, 루마니아 39kg, 파키스탄, 85.1kg, 이란 64.1kg, 아프카니스탄 50.3톤, 방글라데시 28.7톤, 캐나다 159kg, 미국의 경우 2001년 57kg에서 2002년 576kg로 적발이 증가하고 있다.

4. 합성마약류 불법제조 및 밀거래 동향

1) 메스암페타민 및 ATS 불법제조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메스케치논의 각성제가 코카인이나 헤로인을 능가하는 속도로 급격하게 확산되자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에서는 암페타민류의 각성제와 ATS의 남용은 2000~2001년간 약 3,4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2년도 암페타민 적발량은 2001년 대비 7% 증가한 4톤에 달하고, 엑스터시,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등으로 특정하지 않고 보고된 ATS 적발도 2001년 1.3톤에서 2002년 1.4톤으로 증가하여 메스암페타민이 ATS의 적발량의 3/4를 차지하고 있다.³⁷⁾

이러한 합성마약인 ATS가 2001년 21톤, 2002년 15.6톤을 적발하여 전년대비 7% 감소하였으며, 주요 불법제조 및 밀거래 되는 곳은 중국, 일본, 미얀마, 필리핀, 태국, 아시아 등에서 큰 규모로 적발되고 있으며, 적발분포로는

37) 관세청, 『2003년도 마약류밀수동향』, 2004. 7. p. 41.

서유럽이 86%, 동유럽이 10%, 중동 등이 3%이고, 나머지 1%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서는 소량으로 적발되고 있다. 메스암페타민의 소비단위 기준으로 볼 때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적발되고 있고 엑스터시를 제외한 ATS는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류이다.

〈표 2-5〉 메스암페타민 압수현황

(단위 : g)

연 도	메스암페타민		염산에페드린
	완 제 품	반 제 품	
1997년	24,872	29,600	29,950
1998년	28,311	0	0
1999년	29,233	155	2,070
2000년	46,079	5,100	19,000
2001년	169,562	5,000	0
2002년	36,817	0	0
2003년	64,669	140	0

자료 : 관세청, 2003년도마약류밀수동향, 서울: 협동문고출판. 2004, p. 115.

2) 엑스터시류의 물질

환각제 적발은 최근 몇 년간 안정적인 추세이나 2002년에는 4.7톤으로 2001년 4.9톤 대비 4%가 감소하였고 그 중 엑스터시 계열 물질이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서유럽은 유럽의 엑스터시 적발의 98%, 전 세계의 73%를 차지하고, 북미는 20%, 나머지 7%는 미국과 서유럽이 차지하고 있다. 2003년도에 들어서는 아일랜드에서도 밀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특이점이다. 엑스터시 80%이상이 네덜란드에서 생산하고 있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거나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은 벨기에와 독일 국가로 이들 두 국가로부터 국내에도 공급되는 되고 있다.

3) ATS(합성마약)의 불법제조

ATS 밀거래 및 적발 동향은 2000년대에 46.2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ATS 남용자는 2000~2001년간 3,400만 명에 달하며 ATS의 적발량은 2001년 21톤, 2002년 15.6톤으로 2002년 적발분포를 살펴볼 때 주요 불법제조 및 밀거래 지역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북미에서 계속되고 있다.

1999년과 2000년에 최고를 기록하게 된 요인으로는 코카인과 헤로인은 천연 식물성로부터 추출되어 생산되는 마약으로 기후의 영향에 따라 그 생산이 제한적인 것과 달리 합성마약은 어느 곳에서나 생산될 수 있고, 남용방법이 쉽고, 밀조시설, 장비, 원료물질, 최종생산물 생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ATS의 경우 연간 생산량은 약 520톤으로 헤로인은 연간 추정생산량 450톤을 약간 상회하고, 코카인 경우 추정생산량은 800톤의 2/3 가량으로 <표 2-6> 합성마약 ATS 추정 생산량과 같이 향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표 2-6> ATS(합성마약) 추정 생산량

(단위 : 톤)

구 분	연간 추정 생산량		
	암페타민/메스암페타민	엑 스 터 시	합 계
소 비	516 (가중평균)	100~125	616~641
적 발	340/490	50/75	390~565
원료물질	290/410	130/200	420~610
평균 및 범위 (최소~최대)	410(290~516)	113(50~200) 14억정	523(390~641)

자료 : 관세청, 『2003년도 마약류밀수동향』, 2004. 7. p. 51.

제 3 절 마약생산지대별 마약밀매 및 유통실태

1.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³⁸⁾

유엔국제 마약통제본부(UNDCP)의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각국(各國)은 마약남용으로 인하여 국내총생산(GDP)의 0.5%-1.3%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다. 국내 총생산의 손실의 요인으로는 마약관련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미국의 마약남용으로 인한 의료비(醫療費), 약물에 의한 에이즈치료, 기타 등으로 지난 1985년의 440억 달러에서 1991년도 보고에 의하면 760억 달러로 증가했다.³⁹⁾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불법거래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의 1990년대 초반 사이에는 독일, 스페인에서는 1980년대 비하여 6배 증가하였고, 이탈리아는 5배, 프랑스, 스위스는 3배, 영국은 2배인 반면에 네덜란드는 사망률이 10년 전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 마약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⁴⁰⁾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는 미얀마의 태국(泰國)인접(隣接) 국경지대와 라오스의 태국인접 국경지대 그리고 태국지역과 미얀마의 중국인접 국경지대를 말한다.⁴¹⁾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편, 헤로인은 세계 총생산량의 60%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80%가 태국·싱가폴·말레이시아·중국·홍콩·

38) 황금의 삼각지대는 중국, 태국, 라오스, 미얀마에 국경을 접한 고원지대를 말한다. 이 지역은 양귀비 재배에 최적지로서 1년에 3회 수확이 가능하며 연간 약 100만 톤의 생아편을 채취한다. 해발 2000미터가 넘는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이 곳에서 소규모 부족들로 구성된 주민 80만 명이 아편재배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가뭄 등 기후조건의 악화와 해당국의 재배지 감축노력 및 대체작물 개발 프로그램으로 황금의 삼각지대 내 아편재배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연안지방과 접경하고 있는 산(Shan)주와 와(Wa)부족 자치지역에서는 암페타민류 각성제를 연간 8억정 이상 생산하여 아시아 지역은 물론 유럽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39) 관세청, 『최근마약밀수 동향과 단속대책』, 1996, p. 15.

40) 관세청, 상계서, p. 15.

41)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1996, pp. 100-101.

대만·이집트·일본·캄보디아·체코·폴란드 등을 경유하여 미국·유럽·호주 등지로 불법 거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를 경유하고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아시아 지역과 인도네시아 및 호주 등지에 밀매되는 상당량의 마약과⁴²⁾, 그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양은 미얀마·태국 등지에서 소비되고 있음이 보고 되고 있다.

황금의 삼각지대와 초생달지대에서 생산되는 마약은 과거 비단길을 따라 유럽으로 유통하였고 홍콩 등을 경유하여 아시아 각 국으로 이동하였으며 미국에까지 유통되었다. 최근에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국가 등 구(舊) 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신흥도시에서 신흥 삼각지대(新興 三角地帶)로 떠오르고 있고 최근에는 국경치안이 허술한 중앙아시아 CIS5개국(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유럽으로 반입되는 마약의 중간지화(中間地化)가 되고 있다.⁴³⁾

이미 키르기스스탄 남부지방인 오슈 지방에서는 주민 400만 명이 마약생산 또는 밀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마약류 총 생산량 중에서 마약 년 4천8백61톤, 헤로인 3천3백 톤에 이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⁴⁴⁾



〈사진 2-8〉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

42) '99년 중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멕시코, 태국, 터키, 베트남 등지에서 연평균 적발량이 200kg 보다 크게 증가한 총 800kg을 적발하였다. 관세청, 『최근마약류밀수동향』, 2001.6, p. 14.

43) 新興 三角地帶란 마약생산지로 새로 부상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지역 독립국가연합(CIS)3개국의 접경지대를 지칭한다. 국가정보원, 『마약류 용어해설』, 2003. 10, p. 60.

44)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0.

최근의 정정(政情)불안으로 마약의 생산을 부추기고 마약 밀매 밀수를 조직적으로 밀매 운송하여 범죄 조직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나라들을 공략하고 있다. 그중 마약단속이 느슨해진 캄보디아와 네팔을 경유한 마약은 중앙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과 미주지역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다.⁴⁵⁾

1) 미얀마

미얀마는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국으로서 주로 산(SURA : Shan United Revolution Army) 지역의 밀림과 북동부지역의 카친·카야 지역(地域)에서 생산되고 있다. 17개의 반군(叛軍)과 표면상으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채 불안정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얀마 군사 정권은 동북쪽의 마약생산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서 2001년 1천 톤이 넘는 아편생산을 하였다. 중국 연안 지방과 접경하고 있는 산(SURA : Shan United Revolution Army) 주(州)와 Wa 부족의⁴⁶⁾ 자치지역에서는 암페타민 원료로 하는 각성제(覺醒劑)를 연간 8억정 이상 생산하면서 빠르게 유럽으로 확산시키고 있다.⁴⁷⁾

미얀마의 수라(SURA)에는 자체적으로 군사(軍士)를 두고 있으며 황금삼각지대에서 생산되는 총 헤로인의 약50%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이 조직의 군사 우두머리인 쿤사는 쿠데타와 함께 미얀마와 태국의 공격으로 와해되었지만 미국의 DEA와 마약수사기관은 쿤사의 재판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얀마에서는 거절하였고 쿤사의 조직으로 하여금 버스의 승객과 함께 헤로인을 운반하는 밀수출에 관여하게 하고 있다.

45) 국가정보원, 『마약류확산실태 및 근절대책』, 1997, pp. 16-17.

46) 최근 Shan 주와 Wa 부족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정제형(精製型) 메스암페타민(야마, YABA)은 주로 중국, 인도, 태국에서 무수초산(Acetic anhydride)을 수입하고 중국으로부터 에페드린을 수입하여 제조한 후 태국 및 라오스의 밀매조직을 이용하여 동남아를 통해 아시아 전 지역은 물론, 북미, 유럽으로까지 전파한다.

47) 국가정보원, 『국제마약범죄동향』, 국제범죄 정보센터, 2002, p. 13.

그 증거로는 군사의 체포된 1996년의 1월에 비하여 미얀마는 1988년 이후부터는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97년에는 재배면적이 155,150헥타르로서 96년의 163,100헥타르에 비해 소량 감소했을 뿐이다. 아편 생산량은 2,560톤에서 2,365톤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미얀마에서 불법 아편경작은 40% 가량이 감소한 것이었다. 그래도 아프카니스탄에서 아편생산이 크게 급감하여서 미얀마는 최대 생산국가로 부상하게 되었고 2001년에는 약 1,100톤의 아편을 생산한 나라이다. 그 생산된 마약들은 중국, 태국, 라오스 국경지역에 설치된 비밀정제공장에서 헤로인으로 정제되어서 와족(族)·고강족(族)이 밀매하여 중국의 운남성, 태국의 북부지역 등으로 운송된다. 그리고 군사지역 생산량의 40~50% 이상이 방콕을 경유하여 항공·선박편으로 미국, 유럽, 호주 등지로 운송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운남성을 경유하여 홍콩으로 반입되는 육로(陸路) 운송루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미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한국 등으로 루트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⁴⁸⁾ 중국 국경지역에 활동하는 와족(族)은 구군지역(地域)을 군사적으로 장악하여 헤로인보다 수익성이 높은 필로폰 제조 및 밀매를 주력하고 있다.⁴⁹⁾ 최근에는 남미 마약카르텔과 연계하여 헤로인 제조에 필요한 각종 화학약품을 제공받으면서 아편의 반제품(半製品)인 헤로인베이스 상태로 콜롬비아에 밀반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도 1991년 대마전쟁 선포와 1988 UN 협약 가입을 정점으로 하여 매년 아편과 마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아편(阿片)을 소각(消却)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마약제거 15년 계획(The 15 Year Narcotic Elimination Plan)을 추진하여 매 5년 단위로 마약의 생산, 경작, 남용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적 하에 실시중이며 오는 2014년에 완결할 예정이다. 또한

48) 관세청, 『최근마약류 확산 실태 및 근절대책』, 1997, pp. 95-96.

49) 국가안전기획부, 전계서, 1997, p. 103.

미얀마는 UNDCP 지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아편재배에 관하여서는 합법식물 재배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와족과 고강족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들이 마약생산을 위하여 마약(麻藥)은 경작지(耕作地)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민들의 생계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정부로서는 실질적인 마약의 강력통제가 불가능하여 생계수단으로 생산한 불법 아편과 헤로인이 유통되는 세계적 주요 출처생산지이기도 하다. 그러한 주요 아편 경작지 태국, 미얀마, 미얀마 동부, 그리고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은 마약의 밀매 경로의 요새인 것이다. 밀매 수법은 차량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운송하고 있으며 대부분 운반책에 의한 밀매와 직접 휴대 밀반입하고 있다. 나이지리아(Nigerian Connection)가 주 국가이며 중국, 미얀마, 홍콩,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네팔인 등에 의해 밀매 루트가 확장되고 있다.⁵⁰⁾

2) 태국

태국의 주된 남용(濫用) 마약류(麻藥類)는 헤로인, 아편(阿片), 대마초(大麻草) 그리고 메스암페타민 등으로 세계 최대 아편 생산지인 황금의 삼각지대가 태국 북부 고산지대에 걸쳐 있다. 마약생산·유통(流通)·소비(消費) 등 복합적인 문제가 노정(路程)되어 있어서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될 정도이다.

아편생산 면적이 감소하면서 헤로인의 가격이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 등지에서 700g 당(1 unit) 미화 5,500~6,000에서 US\$ 6,500~7,500(1 unit) 고액으로 거래되고 소매가격으로는 약 1그램(g)에 40~50\$로 나타났다. 대마초의 경우에는 태국 북동쪽에서 생산되어 태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다.⁵¹⁾ 특히 메스암페타민은 주로 북동쪽 지역에서 재배되어 태국 내에서 소비되는데 젊은 층과 노동자 계층에서 마약 사용자가 127만명 중 257,965명⁵²⁾으로 보고 되었

50) 국가안전기획부, 『마약류 확산 실태 및 근절대책』, 1997. p. 95.

51) 관세청,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 2002. 5, p. 142.

다.

태국 군(軍) 관계자는 Mong Yawn 지역은 Chiang Mai 북쪽 30Km 떨어진 미얀마 지역으로 이미 1998년 이후 급격히 개발된 신도시로서 건설개발에 막대한 투자금액을 마약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하였던 병폐를 스스로 문제인식하면서 미얀마 정부는 1999년 11월 이후부터 Wa 지역 주민을 신도시인 Mong Yawn 지역으로 약 20만명(5만세대) 이주(移住)시키면서 마약의 합성의 메스암페타민 원료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악소수민족의 계속적인 문화적, 경제적 생활의 일부로서 마약 남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태국정부는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개선을 도모하는 등 마약류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⁵³⁾ 그 결과 1999년 9,006헥타르에서 2000년 현재 6,796헥타르로서 Opium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수확량 역시 '99년 16,211kg에서 2000년 12,233kg으로 감소하였다.

3) 라오스

황금의 삼각지대 마약생산의 제 2위라고 할 수 있을 라오스는 아직까지 아편재배를 금지하는 법안이 없으며 북부 고산지역의 주민들에 의해 한 해 2만 헥타르에서 160톤의 아편을 생산하고 있다. 메콩강 지류에 자리 잡은 헤로인 정제공장은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아편과 헤로인보다 더욱 심각한 마약문제는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호가산(産)으로 2000년에 200만정, 2001년에 100만정을 압수하는 등 전 지역으로 암페타민류의 남용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주로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지대인 북부지역에서 경작하며 1992년 이후로는 재배(栽培)면적(面積) 25,610헥타르, 1991년 29,625헥타

52) 이재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pp. 192-193.

53) 2001. 9. 25~27. 태국 Hua-Hin에서 개최된 마약담당주재관회의(FANC)에서 태국(ONCB)의 Mr. Chartchai가 발표한 내용이다. 관세청, 『최근마약류 밀수동향』, 2002. 5. pp.142-143 참고.

르로서 조금 감소하였고 아편 생산도 265톤에서 230톤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생산된 아편의 대부분이 태국으로 들어가서 중국, 미얀마, 베트남 등지로 밀반출 되고 있다. 사실 미얀마에서 아편생산량을 정확히 산정(算定)하는 것은 어려우나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아편·헤로인 적발 실태를 보면 1992년 2,050kg에서 1994년도에 4,168kg이 1995년도에는 11,727kg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1996년도에는 2,935kg으로 다소 감소를 보이지만 같은 기간에 소매와 도매가격은 순도상의 차이를 감안하면 같은 지역에서 110% 증가한 것이다.⁵⁴⁾

미얀마 당국이 1998년부터 아편근절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으나, 문제는 미얀마의 마약 밀매단속이 강화되면서 나이지리아 밀매조직책들이 단순운반책에서 탈피하여 자체적인 헤로인 분배공급과 통제 체제를 이루면서 발송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하여 특급우편을 이용한 운반수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또 다른 운반인으로서 중국, 미얀마인, 홍콩 인도인, 말레이시아, 네팔인 까지 동원하며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밀매 수출하는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2. 황금의 초생달지대(Golden Crescent)⁵⁵⁾

1) 아프카니스탄

헤로인과 몰핀의 원료가 되는 아편은 아프카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접경지대 이른바 ‘황금의 초생달(Golden Crescent)’ 접경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다. 그중 아프카니스탄은 서남아(西南亞)산(産) 헤로인 마약의 최대 생산국이며

54) 관세청, 전세서, p. 10.

55) 황금의 초생달 지역은 서아시아 지역의 3개국 **아프카니스탄·이란·파키스탄**이 인접하는 국경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아편을 재배해 온 지역을 지칭한다. 유럽지역 헤로인 압수량 중 75%, 미국내 압수량 중 25%, 그리고 아프리카 및 아라비아반도 등 경유지에서 적발된 헤로인의 75%가 황금의 초생달 지역에서 생산된다.

파키스탄에서는 밀수입한 아편을 정제(精製)하고 있다. Golden Crescent지역에서는 '88년에는 4만 헥타르의 경작지에서 1,300톤의 아편을 생산하였고, '99년도에 이르러서는 9만 헥타르에서 4,500톤을 생산하였다. 이 양은 전 세계 생산량의 5,760톤의 78%에 해당하는 량이다. 지정학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점으로 아프카니스탄은 3개국의 생산량의 90%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아프카니스탄이 1970년대만 해도 세계주요 마약생산국의 대열에 포함되지는 않았었다. 1979년 '무자헤딘'의 군사 내전으로 무기구입의 자금을 충당키 위해서 아프카니스탄 전 지역에서 아편을 재배하게 되었고, 1930년대 75톤, 1989년 1,200톤, 99년에는 4,600톤을 생산하였는데 이 량은 세계 아편 생산량의 70%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진 2-9> 황금의 초생달지대(Golden Crescent)자료

아프카니스탄의 대마재배 생산을 하면서 대마수지를 생산하였는데 국내의 정치적 혼란으로 정확한 생산량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1992년 재배면적이 19,470헥타르로서 지난 해 17,190헥타르에 비하면 12% 증가한 것이다. 정제(精製)생산량도 570톤에서 640톤으로 증가하였다. 국제적인 마약통제의 압력을 받아온 아프카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는 2000년 7월 아편 재배를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2001년에는 아편생산이 100톤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1999년 아편이 30\$(1kg)에 거래하였다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kg당 무려 700\$까지 급등하여 2002년에는 탈레반 정권이 비축해 놓은 마약을 방출하여 국고

수입을 만들기도 하였다.

아프카니스탄 마약의 밀매루트는 북부, 서부, 남부루트가 활용된다. 그동안의 기존 루트는 일단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유럽과 미국 등지로 가는 남부루트가 있으며, 이란과 터키를 이용하여 발칸반도와 서부유럽으로 이동하는 서부루트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UNDCP의 결의와 국제통제 강화로 인하여 아프카니스탄의 밀매루트는 월경(越境)이 쉬운 우즈베크와 타지키스탄을 경유하여 러시아, 유럽에 전해지는 북부(北部) 루트가 만들어졌다. 이미 2002년에는 아프카니스탄 생산 헤로인 총 750kg을 국경에서 적발하였고 2003년에는 헤로인 3톤을 적발 압수하였다. 이것은 지난해의 801kg에 비하면 무려 3.8배의 증가된 량이다.

타지크의 경우 러시아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 파견된 러시아 국경(國境)수비대(守備隊)가 타지크-아프간 국경에 배치되어 마약밀매조직을 적극 가담하고 있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에서는 밀매조직의 검거실적이 아주 저조하지만 상당량의 밀매마약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파키스탄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파키스탄은 앵숙 경작과 아편생산, 헤로인 밀조, 밀매, 우회밀수 등 모든 형태의 마약범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길고 허술한 아프칸, 이란과의 국경사이를 이용한 마약밀수범을 식별, 체포하는데 도전을 받고 있으나, 과거 아편생산국가에서 90년대 후반 마약퇴치작전의 성공적 수행으로 이제는 피해국가로 언급되면서 현재 파키스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국내소비와 국제소비를 위한 운송금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파키스탄의 마약 단속국에 의하면 앵숙의 90%이상이 북서부 국경지역에서

경작되고 있고, 이 지역이 험한 산악지대로 정부단속이 미치지 못하여 국내에 약 50만의 헤로인 중독자와 40만의 아편 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국내소비를 위하여 아편은 계속 밀수되고 있다, 그 중 아프카니스탄 전쟁 난민촌에서 아편남용(濫用)이 급속히 확산되는 점으로 볼 때 마약류 남용에 관한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 파키스탄의 주 국경인 산악(山岳)지역에서는 반군(叛軍)에 의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전비(戰費)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UNODC 자료에 의하면 2002년 한 해 동안 아편 727kg, 모르핀과 헤로인 11,379kg, 해시시 24,880kg가 적발되었고 연간 평균 생산량은 900톤~2,500톤에 이른다는 추정이다. 이들의 밀매수출의 루트는 잘 정제(精製)되어 파키스탄, 이란을 거쳐 유럽과 미국 등지로 이동되며 러시아의 신생독립국가 국경으로도 밀반출 되고 있다.⁵⁶⁾

3) 이란

마약의 밀반입 루트로서는 이란을 경유하는 길을 간과 할 수 없다. 이란이 자국 내에서는 아편을 재배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INCB에 보고하고 있지만 마약 밀매조직의 검거 실적을 확인해 보면 전 세계의 아편과 헤로인의 80%를 유통하는 국가로 낙인 받고 있다.⁵⁷⁾

유럽과 미국, 남미 등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란의 변방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란 정부의 강경단속 정책으로 30g 헤로인 밀매와 5kg의 마약 소지자는 사형에 처하는 등의 강력 정책을 펼쳐서 다소 감소를 보이지만 북서부지역과 남동부 산악 지역의 쿠르드 족의 밀조 밀매 상황은 줄어들지 않고 정제된 헤로인으로 터키, 불가리아, 유고 등지로 반출되고 있다. 1997년도에는 아편 23톤, 몰핀 8톤, 헤로인이 450kg 압수되었다. WCO 및 RILO 아·태 지역 정보시스템 자료에⁵⁸⁾ 의하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Golden Triangle &

56) 관세청, 『2003년도 마약류 밀수동향』, 2004. 7, pp. 159-162.

57) 국가정보원, 『국제마약범죄동향』, 국제범죄정보센터, 2002, p. 3.

인도네시아 주변 국가의 이동통로로부터 마약밀수루트를 적발한 사례의 자료를 보면 세계 네트워크 협조 요청문 안건 256건 중에서 부정무역이 82%였으며, 총 256건 중에서 187건(≒74.2%)이 항공편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187건 중에서 75건이 인도네시아내(內) 자카르타 공항세관(56건)에서 적발된 것이다. 그중 대마와 엑스터시의 양은 크게 증가하였다.(표2-5) 밀수 조직과 경로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밀수되어 카라치, 델리, 카트만두, 방콕을 통해 자카르타 또는 메덴(Medan)으로 밀수된다.⁵⁹⁾

<표 2-7> 황금의 초생달지대 & 인도네시아 마약류적발('98~2003년)(단위 : g)

연도별 \ 마약류	대마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해시시	엑스터시	메스암 페타민
1998	1,072	27.8	-	4.7	0.9	119,655	8.1
1999	4,488	14.1	3.2	0.5	300.0	29,510	218.6
2000	6,333	22.7	0.2	17.4	3.9	109,567	76.7
2001	27,391	16.6	-	31.1	5.6	90,523	48.8
2002	61,291	20.0	-	8.5	0.7	76,724	392.8
2003	21,642	13.0	-	13.5	0.6	183,722	16.3

자료 : 관세청, 『2003년도 마약류밀수동향』, 2004. 7, p. 169. *는 (정)

최근에는 파키스탄은 아프리카 출신의 마약 조직이 식량난 해결과 무기구입 및 인구과잉으로 야기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과 미주 등지로 마약운반을 파키스탄, 태국, 버마 국가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나이지리아로 가는 루트가 이용되고 있고, 또 하나의 루트는 동남아에서 콩고를 경유하며 나이지리아, 가나국가(國家)에 까지 밀수한다. 이들은 콩고를 경유하는 마

58) 아·태지역(연락관회의)정보연락소(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 RILO)

59) 관세청, 『2003년도 마약류밀수동향』, 2004. 7. p. 169.

약 루트를 이용하기 위해 2~3개의 여권을 소지하며 파키스탄 등 동남아에서 아프리카를 경유하여 콩고에까지 이르는 또 다른 1개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생산 정제된 아편 헤로인은 편잡 지방의 국경을 통하여 인도로 밀수출되고, 동북국경을 통하여서는 네팔과 미얀마 산악 지방을 루트로 인도로 들어가서 유럽과 북미지역으로 쉽게 밀수출된다는 점이다. 인도 정부는 아편 생산국으로서 합법적인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기 때문이다. 헤로인 제조(製造)에 이용하는 화학약품도 생산 수출하는 국가이며 그 주변국가로부터 마약단속에 검거되는 수도 늘어나고 있다.(표2-3) 아편 경작에 동원되는 인력은 한 해 15만 명에 달하고 판매 수입이 낮은 아편 재배면적은 불법으로 전환하여 1997년 통계에 의하면 14,000h에 이른다.⁶⁰⁾

<표 2-8> 인도& 파키스탄 주변국가 적발실적

(단위 : 건)

연도별 국가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도네시아	-	1	10	6	3			
싱가폴	3	-	5	7	7	*	**	***
말레이시아	1	-	3	7	8			
태국	2	1	-	-	-			

자료 : 관세청, 「최근마약류밀수동향」, 2002. 5, p. 151.

홍콩과 마카오는 MDMA와 암페타민류가 남용되고 있으며, 태국은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100kg이상의 적발사례는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한 해 44,125명 마약거래자들이 자수하였고 그중 329,018명의 중독자들이 치료재활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60) 관세청, 상계서, pp. 150-151.

3. 코카인 삼각지대(Cocaine Triangle)

남미의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등은 코카인(Cocaine) 삼각지대라 일컬어진다. 북미자유무역협정(北美自由貿易協定 : NAFTA)의 출범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자유무역지대 설치 움직임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 중의 하나가 중남미 마약조직이다.



〈사진 2-10〉 코카인 삼각지대(Cocaine Triangle) 자료

이들은 합법무역을 가장해 마약밀매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합법적 무역 방식의 하나가 바로 커피, 과일, 통조림에 마약을 넣어 수송한 뒤, 마약을 판매한 국가에서 마약판매 대금으로 상품을 합법적으로 매입하여 자국으로 운송해와 처분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 마약단속기관이 콜롬비아 항구, 공항의 현대적 장비를 설치로 현대화였고 무역증가와 금융자유화의 발전에 따라 마약조직의 활동에 더욱 이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마약밀매로 인한 외화획득 증가로 마약에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며 NAFTA 반대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NAFTA에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등 마약 생산국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콜롬비아는 이미 베네쥬엘라와 자유무역을 하고 있어서 손쉽게 미국으로 밀수되고 있다.

콜롬비아 밀매업자들은 미국에 밀수출하기 위해 100톤에 이르는 코카인(Cocaine)을 멕시코에 갖다놓고 국경을 넘을 기회만을 보고 있다. 미국 마약

단속반은 이들 신생 조직들이 카리마피마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조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이미 멕시코의 카르텔이 급성장하여 연간 300억 달러 규모의 코카인 마약을 취급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반입되는 코카인(Cocaine)의 4분의3이 멕시코를 통과하고 있다. 미국이 1980년대 다른 밀수루트를 최초 봉쇄한 뒤에 나온 예기치 못한 결과이었다. 따라서 신생조직으로서의 카르텔이 콜롬비아의 마약 생산 및 미국으로의 밀반입 문제가 이전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약물문제를 국가 안전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여 1978년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거국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을 경찰이 관여하고 있지만 무장한 약물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해서 콜롬비아군(軍)과 보안부대(保安部隊)도 동원된다. 1989년 8월 대통령 후보 암살사건 이후 정부는 약물범죄조직에 대한 선전(宣戰)과 계엄령을 선포(宣布)하고 더욱이 테러 등에 의해 격화된 사법기관(司法機關)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약물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만을 전담하는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였고 단속 강화에 나섰다.

1990년에 53톤 코카인을 압수(押收)하고 300여개소의 밀조(密造) 공장을 파괴(破壞)하였으며 7000명 이상의 약물범죄자들을 체포하였다. 강화단속으로 1989년에는 경찰관 420명이 순직(殉職)되기도 하였지만 국가의 대계를 위하여 회복능력을 보여준 용기이다.

4. 필로폰의 삼각지대(White Triangle)

1) 한국-대만-일본

중국-한국-일본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마약거래 역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다. 일본으로 건너 간 한국 필로폰 제조 기술자들이 일본의 강력

한 마약단속을 피하여 1970년대에 국내로 들어와서 대만으로부터는 필로폰 제조 원료인 염산에페드린을 반입하고 국내에서는 필로폰을 제조하여 일본에 판매하는 거래망을 형성한다. 대만-원료, 한국-제조, 일본-소비라는 소위 백색의 삼각지대(White Triangle)라는 구도를 이룬다.



<사진 2-11> 필로폰의 삼각지대(White Triangle) 자료

1980년대 한국 정부도 필로폰 밀조 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범단속을 강화하자 마약제조자들이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제조공장을 차린다. 이곳에서 제조된 필로폰은 필리핀, 대만, 홍콩을 비롯하여 한국을 경유, 일본으로 밀매되다가 90년대부터 한국에서 남용이 확산되면서 중국-제조, 한국, 일본-소비라는 ‘신 백색의 삼각지대’로 불리우게 된다.

3) 필리핀

필리핀은 7,017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아시아의 동남쪽에 위치한 국가이다. 총면적이 남한의 3배에 해당하는 300,000km², 총 7,107개의 섬 중에서 약 1천개 정도가 유인도이고 이중 11개의 섬이 전체면적의 95%를 차지한다. 필리핀은 서북쪽으로 남중국해, 동쪽은 태평양, 남쪽은 셀레베스해(Celebes Sea) 등 3개 대양(大洋)에 둘러싸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학적 요충지이면서도 동시에 인도계 문화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류중심의 이유를 가진 것으로 인하여 불법 마약밀거래를 해음으로써

필리핀의 안보를 오랫동안 위협해 온 것이 사실이다. 매년 약물 남용자가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상습남용자는 1,700,000명이며, 우발남용자만도 3,500,000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스암페타민 염산염(methamphetamine hydrochloride, 일명 샤부<shabu>’의 남용이 필리핀 전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 필리핀 국내의 마약류 검거내역은 <표 2-9>와 같다.

<표 2-9> 필리핀 마약류 검거량 (2000년~2003년) (단위 : kg)

연도별 마약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합 계
메스암페타민	1,000	1,987	1,124	1,045.7	5,165.7
대 마 초	1,429	706	1,362	860,334	863,831
대 마 수 지	264	-	265	-	529
MDMA	1,446 tabs	39 tabs	246 tabs	7,252 tabs	8,983 tabs
코 카 인	0.2	2	8	1.11	122.31

자료 : CRDA/ RILO 월보(Issue No. 184호), p. 23.

대검찰청, 『2003년도 마약류범죄백서』, 2004. 4. pp. 275-277.

필리핀의 불법마약의 시장규모는 약 45억~55억 달러로 이중 95%가 중국산 메스암페타민으로 필리핀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이로 인한 밀매조직의 흉악범죄 75%를 차지할 정도에 이르렀다. 연간 마약 검거사건은 약 2만 여건이 되고 있으며 검거 사범이 많아서 재판이 지연되고 교도소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2000년부터 2003년 동안의 검거 실적량을 비교해보면 해안선을 통한 대규모 밀수와 밀조공장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졌음과 동시에 정부의 마약단속의 강화 작용으로 볼 수 있다. 2001년도에 1,011kg을 검거한데 비하여 2002년도에는 17kg 정도로 급감하였다. 이는 2002년 12월에 발렌주엘라(Valenzuela)시에 소재한 밀조공장을 급습하여 반제품과 액체상태의 메스암페타민을 1,051kg을 적발하였기 때문이다.

마약 밀매수법으로는 밀반입되는 정상 항공 수입화물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이용하였고 일반 포장상품(Packing material)으로 위장하기 위해 빵처럼 굽기도 하는 매우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였다. 운반책으로는 필리핀이 5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 32%, 대만 3%, 홍콩 2%순이다.

필리핀 정부는 1988년 이후 마닐라 공항에서 중국인 2명이 마약을 여행가방에 은닉해서 밀반입하려다 검거된 이후 계속해서 적발하고 있다. 과거 30년 동안 『Republic Act 6425 위해마약법 1972』가 필리핀의 마약단속의 근간을 이룬 법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거래를 통한 높은 범죄수익으로 인하여 밀매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하는 이유로 인하여 마약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있다. 2002년 아로요(G. M. Arroyo) 대통령은 Republic Act 9165 또는 위해마약법 2202』 법률안에 서명하여 7월 4일부터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였다. 또한 원료물질의 수입 및 불법전환을 범죄화 하고 “필리핀 마약 단속청(PDEA: Philippines Drug Law Enforcement Agency)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 내의 마약에 관하여서는 국가마약단속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유일한 단속기관으로 정부 마약단속에 대한 총괄 감독권 및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다. 최근 필리핀 정부에 의의하면 필리핀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약 180만 명이 마약류 중독자이며, 490만 명은 최근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⁶¹⁾

61) 대검찰청, 『2003년도 마약류범죄백서』, 2004. 4. pp. 275-277.

제3장 國際機構의 麻藥統制 실제

제1절 UN 마약류통제 정책

1. UN 마약류통제본부(UNDCP)의 정책

유엔 마약류통제본부(UNDCP)는 유엔마약류통제활동을 조정하고 효과적인 지도력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마약단속에 관여하는 국제적 조직체(組織體), 전문기구 등 유엔조직내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불법 대처해 나갈 특별한 전문기술과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 마약 위원회(The Commission on Narcotic Drugs)는 1946년에 마약문제(麻藥問題)에 대한 정책결정기구로서 경제사회이사회(經濟社會理事會)에 의하여 설립되었다.⁶²⁾ 이 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되는 40개국으로 구성되며 세계의 마약류 상황(狀況)을 점검하면서 국제협약(國際協約)을 지원(支援)하고 마약류(麻藥類) 정책결정(政策決定)에⁶³⁾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經濟社會理事會; 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유엔창설 다음 해인 1946년 6월 21일 산하 기구로서 설치되어 있던 ‘사회위원회(社會委員會)’로 하여금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범죄 방지대책(犯罪防止對策)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동시에 범죄방지에 대한 문제를 유엔이 주도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고 매 5년마다 유엔 범죄방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가자문위원회(專門

62) Basic Facts about the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1992, pp. 13-16.

63) Everyone's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Publication, 1999. 12, p. 263.

家諮問委員會)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⁶⁴⁾ 1955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유엔 범죄방지위원회에서 61개국을 대표하는 범죄방지전문가, 저명학자, 비정부기구대표 등 500 여명이 참가하여 범죄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모색한 바 있다. 그리고 전문가자문위원회(專門家諮問委員會)를 영구적(永久的)자문 기구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어 1965년에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10으로 늘리면서 명칭도 새롭게 범죄방지 전문가자문위원회(犯罪防止專門家諮問委員會)로 변경하였다.⁶⁵⁾

문제는 1970년 제4차에 이르러서 범죄방지회의를 주재하고 국제범죄조직들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데 40여 가지를 권고사항으로 채택까지 하였지만 국제마약밀매의 공항만의 적극적 차단이나 강화에는 대책이 없이 자국의 권리에 맡겼다는 점이다. 범죄방지전문가자문위원회 명칭을 “범죄통제위원회(Committee on Crime Prevention and Control)”로 변경하고 위원을 15명으로 늘려진 이유는 국제간의 범죄가 날로 심각하게 더해가고 마약의 밀매조직의 유통이 더욱 새롭게 활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로 각 국가간의 범죄문제의 심각성이 범죄방지위원회에 보고되면서 국경(國境)을 넘나드는 범죄 특히 마약범죄와 밀매에 관한 범법행위(犯法行爲)가 증가하여 이에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으며 이른바 유엔범죄방지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맞게 개편(改編)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1985년 제7차 범죄방지회의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당위

64) 이 결의문(決議文)에는 1875년의 ‘國際行刑委員會(International Penal and Penitentiary Commission)’의 기능(機能)을 유엔에 주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65) 범죄방지 전문가자문위원회(犯罪防止 專門家諮問委員會; Advisory Committee of Expert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reatment of Offenders),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and Crime Prevention, 1991, p. 12. 김영철, 「국제조직범죄현황 및 대응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pp. 94-96.

성을 환기시킨 ‘밀라노 실행계획(實行計劃)’ (The Milan Plan of Action)을 채택하였으며 이 프로그램 창설 작업이 가시화되었다.⁶⁶⁾ 그 후 1991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효과적 유엔범죄방지프로그램 창설에 관한 세계각료회의(世界閣僚會議)’를 개최하면서 실무(實務)그룹이 작성한 프로그램 안(案)을 확정하였다.⁶⁷⁾ 여기서도 문제의 마약밀반입과 공항만의 검색강화에 대한 국제간의 단속강화내용이 언급하지 못하였다.

이는 마약원료물질의 이동을 단속하고 마약재배작황을 관리한다는 소견에만 몰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밀매조직간의 용이주도한 밀매루트가 마약유통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항만의 밀매단속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따른 유엔마약위원회(The Commission on Narcotic Drugs)는 정확한 밀매루트를 확인하여 법적 차단 관리계획을 국제간에 협약(協約) 되어야 한다.

한국이 대처해 나아갈 길은 국가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사항 방안 중에서 공항만의 철저한 관리교류를 사실화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마약류(麻藥類)의 통제(統制)는 국가 간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이다. 사실상 공항만 밀반입 검색 사항은 국가간의 영공(領空)과 육(陸)·해공(海空)의 민감한 법(法)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약밀매의 루트에 관한 국제적인 공동 협약과 관리가 적극 필요하기 때문이다.

66) 밀라노實行計劃은 범죄의 위협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國際協力を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유엔범죄방지 프로그램이 범죄예방수단(犯罪豫防手段), 범죄(犯罪)와 사회변화(도시화, 現象等)의 관계, 조직범죄방지, 테러리즘, 마약거래, 기타 사회적 해악(害惡)이 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67) 각료회의(閣僚會議)는 110개국이 참석하였고 프랑스, 중국, 독일 등 57개국은 법무장관이 직접 참석하였으며 57개 국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7개 UN기구, 6개 지역기구, 20개 비정부기구 대표가 함께 참가하였다. 대검찰청, “유엔범죄예방각료회의의 참가보고서”, 1992년 1월., pp. 1-5.

2. UN 마약위원회(UN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유엔마약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6개 위원회 중 하나로 마약류통제정책의 입안기구(立案機構)이었다. 유엔 가입국 및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당사국 중 마약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에 있는 4년 임기의 53개 위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정기회의 및 특별회의가 매년 교대로 개최되고 우리나라는 1991년 5월 위원국으로 피선되었다가 ‘95년 5월 재선되었다.

동위원회는 국제 마약류 통제(統制)정책(政策) 결정(決定)의 핵심적 심의 기구인데, 특히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여부를 감독 관장하고 있는 경제사회이사회의 감독기능을 보조하며 또한 새로운 협약이나 마약류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검토 성안하고, 기존 통제물질(統制物質)의 변경이나 추가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UNDCP는 마약담당기구를 체계화하고 효율화시키기 위하여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의 사무국, 유엔사무국의 마약과(麻藥課)(DND) 그리고 마약류 남용통제기금(UNFDAC) 등 기존의 3개 기구(機構)를 통합(統合)하여 마약류 통제집행기구로서 수요와 공급의 양측 면에 균형 있는 접근을 원칙으로 활동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밀매조직의 신흥 루트에 관한 국가 간의 밀접한 국경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장소에 마약류 불법밀매에 관한 국가 간의 협약을 정(定)하여 공동으로 감독·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21세기 마약정책의 최고의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유엔마약연구소와 계획수립실행 및 정보교환의 업무는 이미 분과별로 구성되어있다.⁶⁸⁾ 그러나 마약밀매의 공·향만의 밀매루트를 사전차단하지 않으면

68) 마약과의 분과는 각각 역할에 따라 유엔의 마약류 관련 각종 간행물과 보고서 및 관련회의의 준비 등 행정적 역할과 마약류와 관련한 학술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마약류 정책을 수립(樹立)하기 위하여 각국의 정부 및 의견을 교환하고 규합(糾合)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의기, 국제법상 마약류 규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3, p. 264.

정책적 대안의 업무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임무와 성격이 유엔범죄방지프로그램의 이념과 목표를 구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만 국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국가들의 유엔규범이행을 촉구하거나 조사연구 세미나 정도, 회원국간의 유엔협력 촉진(促進)을 권고할 뿐이므로 마약의 공항만 밀매를 차단하는 데 우선 간여하도록 협약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마약밀매조직은 이들 기구의 감독 밖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자료정보 수집분석도 늦어지고 각국의 행정적 협조 안(案)에는 적극적인 대책 방안으로서의 밀매루트에 관한 검문과 단속 등 마약밀매 적발 강화에 대하여 배제(排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의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국제협력의 사전적 정책을 주도적으로 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각 기관과 기구들이 행정적 요청으로서 밀접한 상호 협조적이라는 말보다는 생산지 국가와 이동되는 국가 간의 공항만 밀매루트를 차단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실제 대책방안이 협력·실행되어야 하고 마약류남용에 따른 통제기금⁶⁹⁾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3. '88년 12월 유엔마약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s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1988년 12월 20일 비엔나에서 106개국의 대표 및 전문가 1,000명의 결의로 “유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s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이 채

69) 유엔 마약류남용통제기금(麻藥類濫用統制基金)은 경제사회이사회에 요청으로 1970년 11월 11일 결의한 제1559호에서 승인하고 동년 12월 15일 유엔총회에서 결의안 제2719호로 통과하였다. 이 마약류남용통제기금은 요원의 훈련과 사무국능력을 확장하고 중독자들의 치료(治療), 교정(矯正) 및 사회(社會)복귀(復歸)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중점이다. 신현덕, 약품남용의 국제관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78., pp. 231-233.

택되었는데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하고 마약류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점이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수익의 이동경로 추적활동과 수익출처 위장행위의 수사(搜查) 및 기소(起訴)를 적극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채택하였다.⁷⁰⁾ 1988년 12월 20일 비엔나에서 106개국의 대표 및 전문가 1,000명의 결의로 “유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방지협약”은 국제형사분야에서 지금까지 체결된 협약 중에서는 가장 상세하고 유효한 수단들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각국의 국내법과 법집행을 조화롭게 주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의 특기할만한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약물범죄수익에 관한 자금세탁 죄의 신설(제3조1항)
- ②자국민(自國民)의 국외 범 처벌(제4조)
- ③몰수·추적대상물의 범위확대(제5조1항,6항)
- ④몰수·추적대상재산의 보전을 위한 동결 압수와 이에 관한 국제사법공조의 신설(제5조2항,4항)
- ⑤외국의 몰수 추정재판의 집행을 위한 국제사법(國際司法) 공조(共助)의 신설(제5조4항)
- ⑥범죄인인도(引渡)(제6조)
- ⑦사법공조(司法共助)(제7조)
- ⑧형사추적(刑事追跡)의 이송(移送)(제8조)
- ⑨통제운반(統制運搬 controlled delivery)의 실시(제11조) 등이다.

그러나 문제점을 보면, 이러한 규제 법안의 성격에는 언제나 범죄의 결과를 유도하거나 실행되어졌을 때의 처벌을 규정하였을 뿐이다. 추징(追徵)과

70) 1988년 12월 10일 유엔에 의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된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협약”을 일본에서는 『麻薬新條約』이라고 한다. 그것은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과 1971년의 ‘향정신성물질규제협약’에서는 상정(上程)하지 않았던 새로운 국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결된 새로운 협약으로 보기 때문이다.

몰수(沒收) 그리고 범죄인(犯罪人) 인도(引渡) 그리고 추징대상물(追徵對象物)을 동결한다고 해서 마약의 밀매성행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협약에 있어서도 마약밀매루트와 범죄조직자들의 유통 루트를 국가간의 범죄자들의 진술과 밀매유통의 정보를 통합 관리할수록 마약에 의한 중독자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스트라스부르그 협약에 대해서는 역시 마약범죄와 테러 범죄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취해진 유럽국가간의 마약불법거래 협약이다. 1990년 11월 8일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유럽이사회가 “범죄수익의 세정(洗淨), 몰수(沒收), 압수(押收) 및 몰수(沒收)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Laundering Search Seizure and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from Crime)이 체결되었다.⁷¹⁾

이 협약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제15차 유럽법무장관회의에서 약물의 남용 및 불법거래에 대한 형사(刑事)처벌과 약물불법거래에 의한 재산수익상의 재산 몰수와 압수 수색을 유럽조약의 적용가능성을 개진한 점에서는 위 “유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s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과의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감안한 유럽에서만 긴급대안일 것이다.

동 협약이 전문위원회를 창설하여 16개국의 ⁷²⁾ 전문가로 구성하고 1987년 10월부터 1990년 4월까지 9회에 걸쳐 회의를 하여 협약 초안을 내놓았다. 1990년 6월에는 각료회의를 열고, 3개월 후인 11월8일 제443회 각료위원회는 ‘EC 범죄수익규제협약(犯罪收益規制協約)’을 체결한 것이다.

71) H.G. Nilson, The Council of Europe Laundering Convention; A Recent Example of a Developing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 :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a New Transnational Criminal Law, 1992, pp.457-478., 김영철, 전계논문, pp. 131-134.

72)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등 16개국 전문가들이 구성되었다. 그 후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유럽공동체가 참가하였고, 호주, 캐나다, 미국, 국제형사경찰기구, 유엔, 국제형법학회, 국제형법형무재단 및 국제사회방위학회 등도 옵서버로 참가하였다.

본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범죄로부터 취득한 불법거래 수익에 대하여서는 몰수(沒收)하는 조치를 취한 점이다. 이는 유럽제국이 상호협력을 전 세계 국가로 향한다는 점에서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유럽협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은 1959년의 “刑事司法共助에 관한 유럽협약” 과, 1970년의 “刑事判決의 國際的效力에 관한 유럽협약” 그리고 1972년의 “刑事訴追의 이송(移送)에 관한 유럽협약” 등의 미완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성격이어서 유럽의 협약국(協約國)들은 주요 현안의 법안을 수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 협약은 모두 제4장 44조로 되어있으며 크게 국가적 차원에서 취하여야 할 내용이다.

- ① 범죄수익(犯罪收益)의 몰수(제2조)
- ② 몰수재산대상의 특정(特定), 추적(追跡), 거래 등 방지(제3조)
- ③ 은행기록이용 또는 압수(제4조)
- ④ 자금세탁죄(資金洗濯罪)(제6조)
- ⑤ 몰수대상재산의 특정, 추적을 위한 수사공조(搜查共助) (제8조 내지 제10조)
- ⑥ 몰수대상재산의 동결(제11조) 및 몰수에 관한 공조(제13조 내지 제17조)
- ⑦ 공조의 거절(拒絶)(제18조), 및 제3자 보호(제21조), 공조의 절차와 일반 원칙 (제23조 내지 25조) 등이다.

특히 자금세탁죄(資金洗濯罪)(제6조)의 규정에는 국외 범(國外犯), 기준 범죄 행위자에 대한 적용여부, 주관적 요건에 대한 추정(推定) 등을 두었으며 제6조 제3항에는 협약 당사국의 재량조항이 있어서 자금세탁행위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⁷³⁾

73) 당해 재산(property)이 범죄수익(proceeds)이라는 것을 알면서, 재산의 불법한 출처를 은닉(隱匿) 또는 위장(偽裝)하거나 기준범죄(基準犯罪)(predicate crime)를 행한 자가 법률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을 원조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전환(轉換) 또는 이전(移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본 협약에도 문제점이 나타난다. 국제사법형사 공조의 성격을 띠면서까지 ‘EC범죄수익규제협약’인 이 협약은 국제범죄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자금세탁 행위를 규제하고 나섰지만 捜査共助, 保全處分 등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성격의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마약新協約’이 약물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거래의 세정(洗淨)을 금지하고 이를 몰수함으로써 마약 범죄를 일삼는 마약집단에 대하여 경계를 선포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서도 몰수, 동결케 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흔들여 줄 수는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이 개방되어 동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⁷⁴⁾ 그러나 자금세탁에 관한 흐름은 EC 내에서 설립된 제3국의 금융기관의 지점에 관하여 적용되고 있으므로 소위 동 법 명령에 의해서만 규제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마약의 불법거래와 밀매조직의 성행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을 뿐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소극적으로 묵인할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동 제3조에서 신용(信用) 및 금융기관의 고객확인(顧客確認)의무에 관하여서 거래기록보존은 5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거래에 관하여서 특별한 주의(注意)를 한다고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수사기관에의 정보제공(情報提供) 등의 사실을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⁷⁵⁾

문제는 불법적 마약밀매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약은 거래의 시작부터 관리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진다. 麻藥流通의 과정이 행정적, 절차적인 관리만으로는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 협약의 유럽적인 성격을 동맹적으로는 잘 체결한 성격 있는 협약이라 할 수는 있지만 국제

74) Gilmore(ed.), International Efforts to Combat Money Laundering, Cambridge Grotius Publications Ltd., 1992.,에서는 유럽공동체(공동체)의 이행을 위하여 각 가맹국은 1993년 1월 1일까지 적절한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행정적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부칙하고 있다.

75) 同(공동체) 제8조

적인 마약불법 거래의 밀매조직의 형성과 거래 루트에 대한 공항만의 검색 차단정책의 대책으로서의 방안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법적인 강화는 범죄의 발생을 처벌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범죄의 사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데에도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마약류 남용 통제활동에는 CMC의 추진 목표에 따른 ①불법수요의 예방과 감소, ②마약공급 통제 조치강화, ③불법거래의 억제, ④마약류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유엔은 1990년에 열린 마약특별총회에서 채택한 정치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각 국의 마약류의 불법남용, 재배, 처리, 배포, 거래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결의인 것이다. 이에는 불법으로 거래되는 루트와 유통 거래망(去來網)을 모두 단속의 의무로 포함한다 하겠다.

그러나 범세계적으로 각 국의 나라들이 마약퇴치를 위한 결의를 동일하게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마약밀매조직자들을 검거한 후에 그들의 신 거래망과 밀거래 루트를 공동정보로 취하지 못한다는 점도 역시 문제점이다. 마약류의 남용과 재배 및 유통의 근절을 위한 정치적 선언을 하고 마약의 밀매유통으로부터 투명하여야 한다. 매년 6월 26일을 세계마약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로 지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국가들은 이에 소극적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5월 제34차 CND 회의에서 유엔마약퇴치 친선대사 제도를 제안하였고 창설하게 창설하였다.⁷⁶⁾ 이것으로 우리의 회원국으로서의 다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로 밀반입되는 차단정책에 있어서의 대응책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76) 1992년 6월 한국출신의 정트리오(정명화, 정경화, 정명훈)가 초대마약친선대사로 임명되었다.

제2절 다른 나라 마약통제정책 비교

1. 미국의 마약정책

1988년 「마약방지법」의 제정과 함께 대통령의 직속으로 국가마약정책기구(ONDCP;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를 설치하였다. 이 기구는 ‘국가마약통제전략권’을 부여받았으며 연방마약통제 예산을 배정한다. 마약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차단함을 목적으로 ‘국가마약통제전략’의 일환으로 국가마약범죄 우범지역을 지명하여 수사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우범마약밀매지역 프로그램(HIDTA),⁷⁷⁾ 마약 및 조직범죄 합동수사반(OCDTF),⁷⁸⁾ 세관과 DEA간의 MOU를 체결하여 각 기관과의 협력지침을 수립하고 국가마약통제전략을 세우고 언제나 관련 조직개편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예산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는 권한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마약남용방지계획을 예산과 더불어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기관과의 통제전략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유대관계를 통하여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활동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미 2002년까지는 미국 내의 마약 수요공급을 25%까지 억제할 것을 계획한대로 활동 조정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는 50%의 수요공급을 억제한다는 실행계획을 예산과 함께 수립하고 있다.⁷⁹⁾

미국내의 마약단속기관인 마약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77) 우범마약밀매지역 프로그램(HIDTA : High Intensity Drug Trafficking Areas) 1988년 조직되어 국내 주요마약범죄밀집구역을 지명하여 수사하는 프로그램이다.

78) 합동수사반(OCDTF : Organizayion Crime Drug Enforcement Task Force) 중요 사안별로 구성되는 임시적인 조직이다. 마약범죄인 경우에는 DEA, 기타범죄인 경우는 FBI가 주도하도록 하는 수사체계이다.

79) 예산은 1981년 15억 달러, 1989년 67억 달러, 1999년에는 171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5년간을 배정하는 정책으로 2003년 한해만도 172억 달러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수립의 요인으로 본다.

은 마약관련법규를 집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주정부 차원의 주요 마약 사범과 관련된 지역의 마약범죄수사 그리고 외국에서의 마약조사활동을 지휘 한다.⁸⁰⁾

외국과 관련한 마약단속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 협의안의 지원을 받으면서 마약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본부와 21개 업무국(Division)이 있으며 30개 구역사무소(District Office)가 있고 115개 거주지 사무소(Resident Office)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미 56개 국가에 82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2000년 현재 5천여 명의 전문 특수직원을 포함하여 9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⁸¹⁾

구체적 협력을 보면, LA, 뉴욕, 플로리다주, 멕시코 변방 국경지대 등 총26개 우범마약밀매지역 프로그램(HIDTA)지역을 두고 이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92개 도시와 40개 주에 마약청의 전문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다.⁸²⁾

마약청은 미연방수사국(FBI)과 마약 수사에 관련하여 본부에 마약관련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DTOs(Dismantlement of Major Drug Trafficking Organization) 전략, 즉 주로 기업적 거대한 마약밀매조직을 수사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자금추적, 회계조사 등을 임무로 하여 조직적인 마약범죄를 근절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 내의 세관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마약밀수에 관한 수사에 대해서는 관할 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관할구역 내 수사권한을 가지는 세관직원은 DEA청장의 “지명”을 통해서만 DEA 수사권한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각 기관과 협력하는데 DEA와 합동수사를 하면서도 시내·외 수사를 수행하는데 있

80) 미국은 약물남용에 대하여 알코올과 약물을 포함한 AOD(Alcohol and Other Drug)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인 중 평생 한번 이상 불법적 약물을 남용하는 인구가 약 8,000만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리화나(6,800만명), 코카인(2,200만명), 크랙(460만명), 헤로인(240만명) 기타 암페타민류가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주로 시작하여 동부지역으로 퍼져나가는데 대한 정책이 강화된 것이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동향정보자료집, 1999.10, p.100 재인용.

81) 관세청, 『최근마약류밀수동향』, 2002. 5. p.130.

82) 관세청, 상계서, p. 132.

어서도 어려움이 없다. 지방경찰청의 요청이 있을 때는 DEA와 기동타격반(METs) 협력으로 수사를 수행하고 있다.

합동수사반 편성에는 미연방수사국(FBI), 미국마약청(DEA), 국세청(IRS), 주류담배무기수사국(ATF), 세관, 지방경찰(Local Police) 등으로 구성되며 마약 관련 수사시에는 DEA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일본의 마약정책

일본은 아편전쟁(1842-1849)의 교훈으로 아편의 사용과 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하였다. 그러나 세계2차대전 후 패망의 일본국민들이 극도의 좌절감으로 인하여 각성제 남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1951년 각성제 취법을 제정 시행하였지만 오히려 각성제 생산과 유통이 일본 폭력단에 의하여 장악하게 되고 전 사회적으로 남용되는 일이 발생하였다.⁸³⁾ 그 후유증은 1953년 이후 중독의 폐성이 드러났으며 55만명의 각성제 중독자와 검거인원 55,664명, 정신장애자가 약 20만명에 이르렀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 이후로 소비향락적인 풍조가 고개를 들면서 각성제를 남용하려는 경향이 크게 늘었다.⁸⁴⁾

일본은 마약류 정책기관으로 경찰청, 후생성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14개 부성청을 두고 각 기관의 연락조정 업무를 두고 마약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 “각성제문제대책추진본부” 기관에서 시작하여 1970년에는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를 두었다. 이 기구는 마약류남용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임무를 가진다. 마약류 사범을 단속하는 각 기관의 업무를 조정 연락하며 현재 관방장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있으며 법무성, 후생성, 경찰청 등 12

83) 이때 우리나라는 1950년에 미군정법령 제119호 마약단속법규정으로 마약류단속과 통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1952년 당시 보건부 산하에 마약과를 신설하여 마약감시원제도를 신설하였다. 1957년에는 마약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때에 마약중독자들이 5만 명에 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84) 민병현, 『마약류사범 현황과 대책』, 법무연수원, 1989. P. 55.

개 성, 청을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

일본의 마약류 사범의 구체적인 단속기관으로는 경찰과 후생성 소속의 마약단속관사무소, 세관, 해상보안청 그리고 법무성을 들 수 있다. 그중에 경찰은 마약류사범의 단속과 수사에 주력하며 관계법령의 적절한 제정 및 개정을 도모하기도 한다.

일본의 마약에 관한 수사 정책에 장점을 든다면, 첫째,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때에는 외국으로부터의 마약류밀수입의 증가를 예고하여 적극 대처한다는 점이다. 해외밀조공장의 소재지 정보 수집, 밀조공장과 규모 정보의 수집분류와 관리, 중심인물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동정을 파악한다는 점이다. 사실 마약류의 밀수입 정보에 대한 입수 없이는 사전 차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마약류사범 수사지도에 고도의 조직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물배정에 힘쓴다는 점이다. 마약수사 강화에 필요한 것은 전문적 지식과 지도력을 가진 지휘체계 그리고 통신장비와 정보관리 분석 등 전달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요원이 항상 투입되고 있는 점이다.

셋째로, 마약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마약류 남용자로부터 입원치료를 조치하면서 행정적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사회, 약사회, 약종상조합 등과 긴밀히 연락하여 주사기 판매와 사용 후 적절한 폐기까지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⁸⁵⁾

일본에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규제는 ‘마약 및 향정신성 약 체취법’과 ‘아편법’ 그리고 ‘각성제 체취법’, ‘대마체취법’, 독물 및 극물단속법 등에 의한다. 이를 마약4법이라고도 한다. 그 후 1991년에 제120차 국회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약체취법’ 등의 특례조항을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공포되었다. 그 내용에는, 첫째, 금융기관 등에 의해서 의심스런 거래의 신고를 하도록 하였

85) 中島治療, 前後藥物防止對策, 警察學論集, 1988. 8, p.4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마약류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통제 정책의 방향』, 2001. p.179 재인용.

다. 이는 FATF 권고를 받아들여서 머니론더링 방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둘째, 마약류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몰수와 추징을 위하여 유체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재산에 확대한 점이다.

셋째, 감시하의 운반(통제배달: Controlled Delivery)을 실시하였다. 1988년 비엔나협약 제11조는 조약체결국에 대하여 감시하에 운반 하도록 한 규정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종래 입국관리법에 의해 마약류를 소지하는 자의 상륙은 일체 허락 또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법에 의한 마약류는 금제품으로서 통관이 불가능하였다.

넷째, 원료물질에 대한 규제이다. 개정은 원료물질과 취급업자의 신고제와 이러한 물질의 수출입신고제를 규정한 것이다. 개정법은 제13조에서 마약4법의 벌칙규정 중 약물의 제조, 양도, 양수, 소지 등의 죄(사용의 죄는 제외됨)와 특례법의 규정 중 머니론더링의 죄 등에 대하여 국외범을 처벌하는 것으로 하였다.

3. 유럽의 마약정책

1)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마약정책의 기초는 마약류 남용자와 중독자에 대한 개념이 중국, 미국, 일본과는 다르다. 중독자에 대해서는 “범죄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면서 “정상적인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중국이 마약밀수 유포를 막기 위해 3도방선 대책으로 불리는 중층 단속 전략으로 국경1선방어선, 내륙후방2방어선, 교통로와 공항만의 거점 3방어선을 두고 통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마약복용 자는 반드시 처벌하고 마약거래자는 총살형을 집행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네덜란드는 Hard Drugs(헤로인, 코카인, 엑스터시)와 Soft Drug(대마초)에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대마류의 경우 5g

이하일 때는 기소하지 않고 커피숍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에서는 마약류의 합법화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영국정부는 반대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보건청의 건강관리부에서는 마약류의 공급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971년 ‘약물 오용법’은 마약류를 소지한 자에 대해 7년, 5년, 2년 구금을 하도록 하고 있다. 중독자는 치료시설에서 메사돈과 헤로인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영국의 마약류 정책은 통제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1986년 약물거래범죄 법(Drug Trafficking Offences Act)은 몰수와 구금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거래에 조력하는 행위 및 수사권을 침해할 때는 새로운 범죄유형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마약류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4. 캐나다의 마약정책

캐나다 정부는 약물남용예방 차관보 조정위원회의 지시로 정부 부처간 실무자간의 협조로 마약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역시 공급가 차단억제 정책을 펼친다. 그 전략으로는 7가지가 있다. 첫째, 연구와 지식개발, 둘째, 지식배부, 셋째, 예방프로그램, 넷째, 치료와 재활, 다섯째, 입법과 법집행과 단속, 여섯째, 조정, 일곱째, 국제협력이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국민의 연장자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예방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술과 마약류가 개인과 가족 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해악임을 홍보하면서 감소시키는데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⁸⁶⁾

86)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의 마약퇴치 정책연구」, 서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02, pp. 51-53.

제3절 한국 마약정책의 기관별 실제

우리나라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모두 규제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치료보호와 상담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의 제조와 소지 및 운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원료가 되는 물질과 매매알선 또는 소유하는 행위에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원료로부터 마약류에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다른 물질을 만들어 내는 일체를 포함하여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형벌을 취한다.(제58조 1항)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경우에는 재배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⁸⁷⁾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약청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기구를 설치하여 강화하고 있다. 국가마약퇴치전략은 검찰을 비롯하여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 모두의 경험과 의지를 살려서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마약류공급 강력차단. 둘째, 마약류수요 철저 감축. 셋째, 범국민적 협조체제 구축. 넷째,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 등의 유기적이고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마약퇴치 모범국가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려 노력하고 있다. 세부적 대응체제를 보면, <표 3-1> 과 같다.

87)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을 2분의1 가중하는 규정이며 미수처벌 규정은 있으나 예비, 음모 규정은 없다.

<표 3-1> 우리나라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응체제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 기관
공급차단	합법마약류 유출방지	철저관리통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내밀반입차단/공급조직분쇄 밀매조직상선. 추적검거	전문적 단속 수사	검찰. 경찰. 세관
수요억제	재 범 방 지	근원적치료/사회복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검찰 식품의약품안전청
	일반국민 확산방지	체계적계몽/교육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민간단체. 언론기관
국제협력 강화	국제공조수사 및 정보교환 강화	국제마약공급조직차단	외교통상부. 검찰. 경찰. 세관. 국가정보원.
	유엔마약위원회 등 마약관련 국제기구협력. 국제협력강화	국내침투차단 마약퇴치 성공국가의 위상제고	

자료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1999, p. 50.

이처럼 마약에 대해서는 공급억제와 차단을 중점으로 하였고 수요억제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 검찰청

우리나라는 마약에 관하여서는 전통적으로 검찰에 의한 단속으로 일관한다. 2000년도 마약류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으로 보면, 검찰은 밀조와 밀매 및 밀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높이고 있다. <표 3-2>와 같이 기관별 점유율은 검찰38.4%, 경찰58.0%, 세관 3.6%로 전체 마약류사범에서는 경찰이, 공급관련 마약류사범에서는 검찰이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88)

88) 대검찰청, 『2003년도 마약류범죄백서』, 2004. 4. p. 102. 참고.

<표 3-2> 2003년도 마약류사범 단속실적표

단위 : 명 (괄호%)

구분 \ 기관별	검찰	경찰	세관	합계
전체 마약류사범	2,895 (398.4)	4,376 (58.0)	275 (3.6)	7,546 (100)
공급관련 마약류사범	613 (51.9)	482 (40.8)	86 (7.3)	1,181 (100)

자료 : 대검찰청, 『2003년도 마약류범죄백서』, 2004. 7. p. 102.

<표 3-3> 마약류사범 단속(1996년-2003년까지)

(단위 : 명)

구분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사범수	6,189	6,947	8,350	10,589	10,304	10,102	10,673	7,546
마약	1,235	1,201	892	923	954	661	790	1,211
향정	3,682	4,445	5,852	7,479	7,066	7,959	7,918	4,727
대마	1,272	1,301	1,606	2,187	2,284	1,482	1,965	1,608

자료 : 대검찰청 마약부, 2004년 internet homepage. 참고, 관세청, 『2003년도 마약류 밀수동향』, 2004. 7. p. 109. 재인용.

검찰에서는 마약사범을 수사하기 위하여 1970년 10월 7일 대검사무 820-12892호 “마약(습관성의약품포함) 합동수사반설치지시”에 의거하여 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에 마약전담검사를 두고 마약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 분석 및 평가하고 수사 지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조직되었지만 필요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것이므로 기능이 약화되고 전문성이 결여된다. 특히 법령과 예산으로 뒷받침된 제도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마약전담의 차단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지방검찰청의 전담반일 경우 수사기밀유지 때문에 다른 청의 유기적 협조 관계를 보장받지 않으면 단속의 효과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995년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마약수사직렬을 신설한바 12개 본청 2개 지청 마약수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1998년에는 마약수사직원이 199명으로 증원되었고 수사 성과도 그 해에 8,350명의 마약류사범을 단속하여 전년 대비115.4% 성과를 보았다. 2001년에는 총32개청(13개 본청, 19개 지청), 공·항만 마약수사분실은 총9개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마약수사직원은 299명이지만 단기간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 수집되고 현장에서 과학적 수사체제로 즉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대검 마약감식실의 소변 및 모발채취 결과를 즉시 볼 수 있도록 첨단화 하여야 한다. 마약수사에는 전국에 걸쳐 기동성 있는 첨단 차량이 투입되어야 한다. 수사요원의 신변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해외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특수훈련과 교육을 마친 정예요원들이 세계 곳곳에 파견되어 있어서 국제적인 성향을 띤 조직 기관이다. 이미 마약의 문제가 국제적인 추세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마약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기여할 수 있는 임무 중에 하나는 전 세계의 마약사범자들과 생산 종사자들과 밀매자들의 외화별이를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자들의 신상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보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범죄상당소'를 전국 22개 주요 요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정보기관과 정보교류확대 임무에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밀반입되는 국제마약류의 이동과 관계자들의 용이주도한 거래를 사전에 정보수집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국가정보원의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분석전담요원이 양성되어야 한다.

국내로 밀반입되는 히로뽕의 9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흘러들어오고 있다. 헤로인의 주 공급처인 동남아에서 중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때에 국정원의 정보수집의 일 순위 국가지점은 중국이다. 그곳은 북한산 히로뽕의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중국-일본-한국의 국제적 커넥션에 대한 수사당국의 국제적 감시가 미흡한 부분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의 마약청(DEA)와 미연방국(FBI)요원들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요원들을 한국뿐만 아니라 덴마크, 브라질, 태국, 등 주재관을 파견하여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 이들의 정보수집과 교환의 긴밀한 관계를 우리 정보원에서도 협조체제로 대처하여야 한다.

3. 관세청

항만과 공항에 설치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관세청 산하의 세관조사과 소속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마약밀수출입의 감시활동을 임무로 하고 있다. 세관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수사권 확보는 필요한 것이며 강화되어야 할 조건이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한 정보의 교환과 수사장비의 지원 그리고 필요한 전담요원의 전문성 활용과 교육 강화의 방법은 마약단속의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업무 중에서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는 실정에서 입국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신속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탐지견의 현장 배치와 마약전담요원의 배치가 더욱 필요로 하다. 현재 인천 공항세관에는 마약조사과를 신설하여 마약전담순회감시요원(Rover)으로 임무를 계속하고 있지만 여행객의 증가에 비하여 담당할 업무량이 많다.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율이 일어나고 있음으로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마약우범자들의

밀반입 출입이 공항만을 통하여 더욱 일어날 것이므로 출입국시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파악하는 모니터링의 정책도 최고정책으로 정착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국제간의 협력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세관의 마약수사의 능력이 세계최고의 기관임을 우범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한 수사능력이다. 지금도 그들의 수법은 날로 다양해지고 주도면밀하게 이루어고 있다. 특히 마약밀수의 한 방법 중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소포를 이용한 방법이 늘고 있어 세관의 전문 인력과 첨단장비의 배치가 요구된다. 민간인에 의한 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민간인이 제보한 정보수집과 활용의 조기정착이 요구된다.

1) 국제협력 정책

마약조직은 그 특성상 음성적인 점조직 형태로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중국, 동남아, 일본, 미국 등 외국에서 밀반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이시점에서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공·항만에 대한 감시체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마약우범자들의 동태와 정보수집의 축적관리는 필수이다. 이러한 정보를 외국과의 공유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긴밀함은 절대적인 것이다.

내국인의 출입국자가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1999년 비해 40%가 증가하였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1999년도 13만5천여 명에 비하여 15%증가한 23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에 의한 마약밀매반입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마약류의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 내는 요인으로 각국은 공급억제 위주의 정책을 핵심기조로 유지하고 있으나 이것은 인식의 차이로 어느 정도는 통제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마약류 공급억제정책에 대한 실제에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공급생산지에 대한 통제정책이

협약적이고 규제적 성격이 강할 뿐 생산의 밀매유통과정에 따른 통제정책에는 약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마약통제의 정책에는 마약거래의 공급수요 관계는 지금도 마약류남용이 문제시되고 확산되는 점으로 볼 때 이는 공급이 이미 수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고전적 이해보다 지금은 오히려 수요가 공급을 부르고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마약의 밀매유통의 정책에는 국제간의 사전협력의 수요라인과 공급라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마약밀매유통의 사전적 통제는 ‘강력한 마약금지와 같은 범죄화 정책’이 지속되어온 이래로 마약류 사용에 대한 단속위주의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마약중독에 따른 치료와 재활의 관심이 높아진 데 비하면 공급억제정책의 기조에 대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⁸⁹⁾ 이것은 공급억제정책의 위주에서 마약류 남용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임을 스스로 나타나는 정책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 제공에 대해서 전 세계의 마약류 생산지와 그 밀매 유통에 대해서 국제간의 긴밀한 사전 협약과 실무행정의 협력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정부가 2001년 11월 1일에 국무총리가 “마약류 종합대책”을 발표한 내용에서 치료보호부의 집행유예제도와 상습투약자에 대한 치료 재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치료보호 및 기소유예제도의 활성화 대책으로는 마약의 밀매유통의 차단을 기대할 수는 없다. 마약생산지로부터의 국제적인 사전 차단을 위한 실무적 행정협약이 절실하다.

2) 공·항만 출입국 모니터링의 정책강화

마약조직은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교묘하고 치밀하게 활동하고 있으므로 마약류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가의 공안당국과 정보교

89) 조성권, “21세기 국가 반마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21세기 한국 마약정책의 새 방향,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p. 191.

환 등 교류 협력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공작수사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공 항만의 출입국 관리도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마약 관계청의 마약조사국의 우범자 선정 및 전산처리를 통한 신속한 차단 정책을 펴고 있다. 외국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신속하지 못할 때 를 대비하여 단속위주의 기관별 실적 경쟁 및 수사권을 둘러싼 관계 부처간 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항만의 전산입력 처리 방식은 그 실효성을 높이는 마약수사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을 착안한 이 방법은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마약 우범자의 동태와 내·외국인을 구분하 여 그 동태까지 파악하고 정밀검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수집 추적하여 세관의 마약수사 방식에 새로운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임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3-4, 3-5>와 같다

<표 3-4> 우범자 입력 전산(마약조사과)

세 부 업 무 명	내 용	비 고
마약우범자 선정	· 자체입수 및 유관기관(검찰, DEA) 의 정 첩보자 · 마약류 사범 출소자 · 국외 정보(WCO/RILO, 관세관 등)	
조사정보시스템에 입력	· 관세행정시스템→조사정보시스템→정보 관리→마 약정보등록→마약우범자등록메뉴에 수시 입력	업무흐름도 참조
여행자정보시스템(TIS)에 연계 입력	· 조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여행자정보시스템에 마약우범자(D급)로 매일 자동 입력	A-S급 9등급 구성

자료 : 관세청 조사감시국 마약조사과, 마약우범자출입국 모니터링업무, 2004. 9. p. 2.

<표 3-5> 마약우범자 조회추적정보(일선세관)

세부업무명	내 용	비 고
마약사범조회명단 (검찰공항분실)입수	· 매일 마약우범자의 출국 명단 입수 · 관련 자료 입수, 파악 (항공사 예약기록, 주민 및 전과자료, 사진자료 등)	인천공항 세관만 가능
법무부의 입국심사 정보 실시간 검색	· 법무부의 여행자 입국심사시 Key-In 자료 (성명,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 여행자정보시스템의 D급 우범자 자료 대조	인천공항, 김해, 제주세관
우범자입국통보	·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여행자정보시스템과와 마약로버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입국 심사대번호 통보지정	
우범자 추적	· 마약 로버(조사직원)의 추적 및 동태 감시 · 추적시 착안사항 - 동행자 여부 - 다른 여행자와의 접촉여부 - 걸음걸이 등 거동이상 여부 - 표정등 외모의 긴장여부 - 화장실에 마약등 투기 여부	

자료 :관세청 조사감시국 마약조사와, 마약우범자출입국 모니터링업무, 2004. 9. p. 2.

마약우범자를 과거의 마약전과여부와 여행의 목적과 현재의 직업상을 정밀 검색하여 면담하기도 하며 수집된 자료를 법무부의 여행자 입국 심사시 Key-In 자료 (성명,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와 · 여행자정보시스템의 D급 우범자 자료 대조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개인별로 카드를 작성하여 유관기관의 필요시 협력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검찰청에서 출소자도 조사감시정보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며 추가 자료시 개인파일에 작성된다. 필요시마다 본청 검색과 세관통보에 검색 할 수 있으며 공 · 항만 출입시에 로버검색 등 사전적 마약 단속의 강화를 하고 있다.

3) 합동수사 정책

국내적으로는 검찰(檢察), 경찰(警察) 등 주요 단속기관은 합동반으로 구성

하여 관세청 조사감시국의 마약조사과와 마약류 밀수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하거나 일선 세관의 내사 착수 등으로 공조 수사를 확대 정착하여야 한다. 이미 전 세계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관세행정의 세계화, 선진화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및 수출입 물품의 대폭적인 검사생략 등으로 관세절차의 신속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악용하는 마약류 우범자들은 공·항만을 이용한 등 밀수를 방지할 제도는 계속 보완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합동수사의 특성이 긴밀성과 신속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 할 중요한 힘은 예산책정의 보장성인 것이다. 예산상의 이유와 인력 충원의 부족을 시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에 편중되어 있는 공해상의 밀거래에는 더 이상 사각지대라는 이유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나라 외국인의 공·항만 경로로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검거된 인원이 2001년 70명, 2002년 88명, 2003년에는 86명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6>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

(단위 : 명)

연도별 국가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마 약	14	3	3	12	21	30
대 마	14	28	7	30	27	35
항 정	0	29	13	28	40	21
합 계	28	60	23	70	88	86

자료 : 관세청, 『2003년도 마약류밀수동향』, 2004. 7. p. 120.

밀수 수법이 지능화되고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세관직원의 양성과 전문화 교육의 업무는 계속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항과 항만 및 보세구역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밀수출입 발생일 경우 세관뿐만

아니라 관련수사기관의 빠른 공조 수사와 협조는 보장되어야 한다. 합동수사반 소속의 관세청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동수사반장의 지휘에 따라 합동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속한 대응과 대처에 관하여서는 지휘조직보다 일선 전문기관 공무원의 우선적인 처리에 힘을 주어야 한다.

결과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가 사실상 마약밀매사범 또는 밀반입의 사전적 대응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범위에 대해서 특별합동수사반원은 마약 사건에 따라 관할이외의 지역에서도 수사 가능케 한 대검 예규 제322호의 의미는 발전적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만일 지휘체계를 기다리다가 시간의 긴박성을 놓쳐버린 후 사건 수습의 결과를 실패하거나 지연케 하는 것보다 마약밀매 차단을 하는 우선 결과를 성공시키는 합동 수사의 성격이 무엇보다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4) 수요억제정책의 시민단체

마약으로부터 안전지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급을 차단하는 노력과 수요에 대한 억제정책도 병행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감시망을 강화한 기관이다. 밀수루트를 봉쇄하고 마약밀조 자들의 경작과 제조를 단속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습관성 의약품의 행정신성 규제를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전 계몽과 홍보를 강화하기도 한다. 대한약사회에서는 1992년 5월 12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창립하여 전 국민적 홍보활동을 맡게 되었다. 시민단체에서도 치료와 재활을 통한 향후 수요계층에 대해 차단하고 억제되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⁹⁰⁾

90) 시민단체로는 YMCA,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마약범죄시민사이버감시단, 학술단체로는 한국국제마약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료협회로는 대한한의사회, 대한제약회, 사회단체로는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년회의소, 언론기관으로는 대한매일, 스포츠서울 등이 마약류 근절 및 계몽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제4장 21세기 韓國 麻藥統制 政策의 새로운 方向

제1절 ‘국제공조 사무소’ 설치 정책

미국이 2000년 4월에 콜롬비아 대 마약전쟁 정책에 16억 달러를 지원해주고 영국 해외정보국(MI6)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간에 마약밀거래 망 차단을 위한 정책으로 각국간 상호요원을 파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키로 한 예는 국제간의 마약범죄정책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⁹¹⁾

마약류 불법거래범죄의 특징은 조직적(組織的) 규모이면서 복합적 활동이기 때문에 각국간의 정보교환은 절대필수 조건인 것이다. 때로는 불법무기류의 사용으로 인명의 살상, 폭력, 탈세, 밀수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간의 관련 당국과 충분한 공감(共感)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마약밀매조직 범죄자들이 국제적인 경향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제 협력 하에 공동대처(共同對處) 하여야 한다.

마약남용통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한 정보교환(情報交換) 체제(體制)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제협약의 관련 기구에 가입하여 국제간에 일어나는 마약밀매 및 마약불법 반입, 유통(流通), 마약불법 밀매자(密賣者)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共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요한 마약 관련한 학계, 정부,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관리할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1) 유엔범죄방지프로그램⁹²⁾.

91) New York Times, 2000. 4. 13. vol 7, 참고.

92) 1985년 제7차 犯罪防止會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환기 시킨 ‘밀라노 실행계획(The Milan Plan of Action)’을 채택한 이후 프로그램 창설 작업이 가시화 된 것이다. Basic Facts about the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1992, pp. 13-14.

본 프로그램에는 범죄방지위원회(犯罪防止委員會; Commission), 犯罪防止會議(Congress), 범죄방지사무국(Secretariat), 지역범죄방지연구소(Institutes) 기구가 있다.

2) 마약조직범죄관련 유엔기구

즉 유엔마약위원회, 유엔마약과(麻藥課), 유엔마약류남용통제기금, 국제 마약관리국(國際麻藥管理局).

3) 유엔전문기구

즉 유엔教育科學文化機構, 세계보건기구(世界保健機構), 식량농업기구(食糧農業機構), 국제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

4)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세계각료회의(世界閣僚會議)⁹³⁾

5) 국제형사경찰기구(國際刑事警察機構)(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⁹⁴⁾ ICPO의 국제수사공조(國際搜查共助).

6) 전통국제법상의 麻藥類去來防止協約, 즉 아편에 관한 규제 협약으로서 1912년 헤이그협약, 1925년과 1931년 제네바 협약, 1948년 파리의정서(議定書).

7)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⁹⁵⁾ “麻藥에 관한 單一協約”(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93) 세계각료회의(世界閣僚會議)의 주된 내용은 국제범죄조직의 문제점 및 위협(威脅), 국제조직범죄의 척결(剔抉)을 위한 입법(立法) 등 각국 국내조치의 지침(指針), 수사(搜查), 소추(訴追), 사법과정에서의 국가간 협력, 국제협력의 지침, 조약(條約), 등 국제협력의 성안(成案) 가능성(可能性),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의 몰수, 통제, 유엔의 향후 활동방향 등 각 주제별로 각국 및 유엔이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具體的) 조치(措置)들을 상세하게 명시(明示)하고 있다. 대검찰청,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세계각료회의 참가보고서』, 1995. 2, pp. 5-7.

94) 국제형사경찰기구(國際刑事警察機構)(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를 통한 국제수사공조의 역사는 1956년 비엔나에서 열린 ICPC(국제형사경찰위원회)제25차 총회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ICPO헌장(憲章)을 채택하면서부터이다. 주요 내용은 조직, 총회, 집행위원회, 사무총국, 국가중앙사무국 등 4개 기관으로 구성, 대륙별지역회의, 국제심포지움 등 국제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ICPO 활동을 보완하는 것이다. 박종록, 국제범죄수사의 이론과 실무, 1996, p. 66.

95) “麻藥에 관한 單一協約”(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經濟社會理事會)가 1958년 7월 28일 결의한 제689호에 의하여 사무총장에게 단일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全權會議을 소집하였고 1961년 1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New York의 유엔본부에서 73개 국가의 참석하에 1961년 3월 25일 “麻藥에 관한 單一協約”(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1964년 12월 13일 효력의 발생에 필요한 비준을 얻어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있고, 1992년 10월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139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2년 3월 25일 가입, 1975년 8월 8일 효력발생하고, 1977년 8월 27일 條約 제601호로 개정하였다.

- 8) 향정신성물질(向精神性物質)에 관한 協約⁹⁶⁾(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 9) 麻藥類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협약.⁹⁷⁾
- 10) EC 범죄수익규제협약 ⁹⁸⁾
- 11) 자금세탁규제에 관한 EC命令 ⁹⁹⁾
- 12) 金融去來研究委員會(FATF)¹⁰⁰⁾
- 13) 刑事司法共助에 관한 유럽條約¹⁰¹⁾

96)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은 1971년 2월 21일 비엔나 회의에서 채택한다. 주요내용은 향정신성물질을 의학(醫學), 과학적(科學的) 목적을 위한 이러한 물질의 사용(使用)을 부당하게 저해(沮害)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협약은 ‘麻藥單一協約’과는 별도로 체결함으로써 마약류관리가 이원화(二元化)되었는데 마약의 합성기술의 발달로 이미 이를 굳이 이원화 할 필요가 없음에도 마약의 사회악을 척결하려는 입법의지를 보다 중요한 점으로 본다.

97) 1988년 12월 20일 비엔나에서 본 협약을 전문(全文)과 第34條구성으로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은 麻藥犯罪收益에 관한 자금세탁죄의 신설(제3조), 자국민의 국외범 처벌(제4조), 몰수, 추징대상물범위확대(제5조), 犯罪人引渡(제6조), 사범공조(제7조), 형사소추의 이송(移送)(제8조), 통제운반(統制運搬)(제11조), 등이다.

98) ‘EC범죄수익규제협약’은 한마디로 “범죄收益의 세정(洗淨), 압수(押收), 수색(搜索) 및 몰수(沒收)에 관한 협약(協約)” 체결이다. 第443回 閣僚委員會는 1990년 9월 12일 협약 초안을 승인하고 동년 11월 8일 체결한다. 이 협약은 1959년 “형사사범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1970년 “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유럽협약”, 1972년의 “刑事訴追의 移送에 관한 유럽協約” 등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 K. D. Magliveras, Defeating the Money Launderer-The International European Framework, The Journal of Bussiness Law, March 1992, p. 165.

99) 1991년 6월 10일에 제정된 이 EC명령은 공동체입법의 하나로써 달성되어야 할 결과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을 구속하지만 그 형식이나 방법에 관해서는 각 가맹국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EEC條約 第189조), 명령의 이행(履行)에 관하여 각 가맹국은 조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가맹국이 상당한 기간(期間)이 초과(超過)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국이 共同體法院에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EEC조약 第170조). 이는 일부 기관만을 규제할 경우 자금세탁의 무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00) FATF는 1989년 9월 이후 매월 1회 회의를 계속하여 1990년 2월 2일 보고서(報告書)를 정리하여 참가국(16개국 참가, 프랑스가 의장)의 승인절차를 거쳐 1990년 4월 19일 참가 각 국가에서 정식 공표(公表)하였다. 주요 내용은, 제1부는 돈세탁과정의 규모와 수법, 제2부는 돈세탁에 대항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조치(諸措置), 제3부는 권고(勸告)로 되어 있으며 그중 제3부의 권고에 있는 돈세탁 규제를 위하여 앞으로 해야 할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101) 이것은 유럽이사회(理事會) 회원국(會員國)간(베네룩스3국, 노르딕제국, 유럽이사회회원국, 美洲국가기구:OAS)에 체결된 그야말로 「유럽」협약(協約)이다. 그러나 내용에 보면 관세(關稅)와 수출입(輸出入) 통관(通關)에 대한 규제의 내용으로 짜여져 있으므로 특히 형사재판에 대한 수사공조를 위하여서 다자조약(多者條約)이 존재하므로 우리나라도 깊이 연구해 볼만하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국제조직범죄들은 그 활동영역이 일반인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불법화된 분야에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약(麻藥), 매춘(賣春), 인신매매(人身賣買), 도박(賭博) 등이 그들의 전형적(典型的)인 활동이다. 특히 마약분야는 東·西洋을 불문하고 組織犯罪들이 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력하고 있음으로 그 대책의 시급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가 조직범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가 없으며 관계정부도 마약조직범죄의 근절(根絶)을 위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보완 유지관리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마약밀매조직의 뿌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의 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관리하는 관계 사무소 또는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마약생산지 초기 통제 정보시스템 구축

매년 계속해서 유엔마약위원회 회원들이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마약단속의 결의를 확인하고 국제적인 합의 문서를 초안하는 것이다. 이는 마약의 중독성과 심각성이 정책적으로 지속함이 필요한 때임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안을 합의하는 데서 마약의 심각성은 멈추지 않는다. 마약의 초기단계인 생산성 지역을 초기 차단관리 하여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2001년도 유엔마약위원회(UN Commission on Narcotic)의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약 1억8,500만명이 불법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 대마 사용자가 1,470만명, 암페타민류 사용자 3,300만명, 엑스터시 700만명, 아편류 1,300만명(이중 헤로인 남용자는 9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4-1> 세계아편 총생산 비교(2000년~2003년)

(단위 : 톤)

구 분	세계 총생산(톤)	아프카니 스탄	미얀마	라오스	파키 스탄	태국	콜롬 비아	기 타
2000년	4,600	3,276	1,000	150	12	13	47	92
2001년	1,600	185	1,100	134	5	15	43	118
2002년	4,500	17,300	10,474	112	2.7	507	19,157	-
2003년	3,600	3,400	810*	120	3.4	18.1	-	-
비율%	-66%	-94%	-40%	-9.5%	-64%	+35%	-10%	+12%

자료 : 관세청, 「최근마약류밀수동향」, 2002. 5. p.15 참고, 관세청, 「2003년도 마약류밀수동향」, 2004. 7. pp. 21-23. 재인용

* 미얀마는 UN과의 합동조사에서 2003년에는 810톤으로 조사되었다.

아편의 세계총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경작지는 2001년 142,800헥타르로 전년도 220,000헥타르에 비하여 36%가 감소되었다. 아편의 생산량은 2002년 총 4,500톤에 비하여 2003년도에는 3,600톤으로 약 16%가 감소된 량이다. 이는 아프카니스탄의 아편생산량이 2000년도 3,276톤에 비하여 2001년도에 185톤의 량으로 약 94% 격감하였다가 경작지가 2003년 80,000헥타르로 약 8%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아편의 최고 경작이라 할 수 있는 Helmand 지방의 경작이 급감했고 제2의 Nangerhar 지방의 아편경작면적도 최소 수준인 218헥타르에 그쳤기 때문이다.¹⁰²⁾

세계아편 생산량의 비교를 보면서 설명하면, 이렇게 생산된 아편의 량과 코카인의 생산량은 첫 번째로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 루트로 이용되어 밀반입되고, 두 번째로, 황금의 초생달지대(Golden Crescent) 루트로, 세 번째로, 필로폰 삼각지대(White Triangle)루트로, 네 번째로, 코카인 삼가

102) 관세청, 「2003년도 마약류밀수동향」, 2004. 7. p. 22.

지대(Cocaine Triangle) 루트를 통하여 전 세계 밀매조직들에 의하여 각국으로 유통되다가 적발되는 것이다. 현저하게 드러난 3대 밀반입루트는 다음과 같다. 북부루트(아프간→타지키스탄→중앙아시아→동유럽→서유럽)와 서부루트(아프간→이란→터키→발칸루트→서유럽)와 남부루트(아프간→파키스탄)이다. 이 루트를 이용하여 아편과 헤로인이 밀수되고 있는 것이다.¹⁰³⁾

코카인의 세계 적발량을 보면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 등 북미지역에서는 코카인 적발량이 감소하였는바 90년대에는 미국에서 100톤가량의 량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99.7톤에 머물렀다는 보고가 있다. 멕시코에서는 '99년에 35톤, 2000년에 23.2톤으로 감소하였고, 캐나다에서는 1.6톤에서 2000년 277kg으로 급감소 했다. 그러나 <표 4-2>의 코카인의 생산량을 보면 언제나 밀수의 여지를 남기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4-2> 코카인 국내 반입량 (1999년~2003년)

(단위 : g)

연도별 국적별	'99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합 계	2,092 (2,092)	2,500 (1,850)	110 (110)	1,170 (1,170)	905 (905)
브 라 질	0	0	0	1,170 (1,170)	0
페 루	0	0	0	0	0
콜롬비아	0	0	0	0	0
미 국	65 (10)	0	110	0	905 (905)
캐 나 다	0	0	0	0	0
볼리비아	1,000 (1,000)	0	0	0	0
칠 레	1,207 (1,027)	0	0	0	0
파 나 마	0	2,500 (1,850)	0	0	0

자료 : 대검찰청, 『2003년도 마약류범죄백서』, 2004. 4. p. 115 참고

103) 관세청, 「최근마약류밀수동향」, 2002. 5. p. 17.

조직범죄(組織犯罪)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일반적으로 인터폴에서는 그들만의 내부적 강한 통제력을 갖는 계급구조를 가지며 힘, 영향력,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조직(私組織)의 의미로서 정의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인 불법마약류 거래 등에 깊이 개입되어있고 국제조직범죄로는 이탈리아계 마피아 ‘코자 노스트라(Cosa Nostra)’, ‘카모라(Camorra)’, ‘누드랑게타(N'Drangheta)’와 미국계 마피아인 ‘라코자 노스트라(La Cosa Nostra)’, 멕시코계의 마피아, 쿠바계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폭력단), 홍콩과 대만의 삼합회(三合會), 콜롬비아의 메델린 카르텔, 칼리 카르텔, 나이지리아 커넥션 등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4)

더욱이 약물의 새로운 신종 마약이 속속히 등장하면서 마약류남용이 국제화되는 흐름에서 마약밀매조직범죄자들은 중요한 수입원이 마약불법거래인 것이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마약을 경작, 재배, 생산, 제조에서부터 거래(去來), 돈세탁(洗濯)에까지 깊이 개입하여 국제사회의 마약류 문제를 아주 심화(深化)시키고 있다. 그들의 아편의 밀수조직범죄 영향은 좀체 멈추지 않고 각국으로 밀매되고 우리나라에까지도 뻗치고 있다. 헤로인, 몰핀, 아편 등 아편류 마약의 전 세계 적발량은 '99년 85톤에서 2000년 96톤으로 증가했고, 헤로인 적발량이 40%이상 증가, 몰핀 5%, 아편은 11% 감소되었을 뿐이다.

전 세계에서 마약 적발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아프카니스탄의 아편 생산이 순도는 낮은 것으로 많은 량이 가공되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아편 적발량에 있어서 이란, 파키스탄, 트루크메니스탄, 우주베키스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적발량이 증가하였다. 그 중 한국은 세관(稅關)에서 2000년에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를 62,471.3g(287,187정, Tablet) 12001년에는 151,253.66g(188,989정, Tablet)을 적발하였다. 이는 2000년에 비하여 건수는 17.2% 감소한 것이지만 수량은 2.4배를 넘는 것이다.

104) 조선희, 『세계의 조직범죄』, 서울:청목사, 1994, p. 13.

앵속과 아편 그리고 헤로인, 코카인, 대마초 및 대마수지와 메스암페타민 등의 밀수조직의 끊임없는 한국형 안착에 대한 시도는 다음과 같이 마약류 단속의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비록 다른 나라에서처럼 톤 량의 비교는 아니지만 안전한 수치만은 아니다.

이러한 마약밀매의 증가와 통계수치의 의미에서 볼 때 유엔의 마약불법거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가 안전하다 할 수 없음은 이미 밀매조직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소비국으로 손을 뻗친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 등지로 밀수되는 헤로인의 중계지로 이용되었을 뿐이지만 '97년 이후부터는 국내 소비목적으로 밀반입되다가 헤로인 500g이 적발되는 사례로 시작하였고,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2001년 세관에서 적발되는 아편이 8kg, 코카인 18kg, 헤로인 5kg, 대마와 각성제가 각각 797kg, 202kg 이나 적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다. 마약의 생산지로부터 어떻게 이동되는지에 대한 합법적 경로와 마약밀매자들의 비밀루트를 통한 경로를 국제적 협조아래 정보를 공유하고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그 밀매조직원들의 동향과 회수를 보면 이미 전 세계의 조직원들이 개입하고 있으며 2003년 한 해 86명이 적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4-5>

그러므로 이들의 개입 동향이 밀매조직이 아닐지라도 마약의 생산지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점은 확연한 것이다. 이들의 경로에는 항상 4대 주요 생산지대로부터 루트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들어 올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약 밀수입의 적출국의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그 4대 주요 생산지 인근 지역 국가인 중국25건(52%), 미국5건(10%), 필리핀3건(6%), 이란2건, 태국1건 등에서 마약류 등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3〉 우리나라 마약류 적발량(1998년~2003년)

(단위 : g)

연도별 마약류	건수/ 중량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앵 속	건수	3	-	-	-	-	-
	중량	14	28,268	27,227	12,566	18,685	58,945주
헤로인	건수	3	1	1	2	-	-
	중량	2,013.65	330	226.5	566	1,078	7
코카인	건수	3	-	-	-	-	-
	중량	3,510.3	2,251	1,800	111	1,170	905
대마초	건수	6	10	13	6	-	-
	중량	3,290.43	423.8	49,365.3	3,138.57	194,795	37,274
대마수지	건수	2	1	2	4	-	-
	중량	181.17	2	596.28	4,017.6	765	3,279
메스 암페타민	건수	25	14	15	31	-	-
	중량	12,685	2,190	10,072.59	143,313.69	36,817	64,669
정제형 마약류	건수	-	-	2	4	-	-
	중량	-	-	2,471	2,633	39,011	37,784

자료 : 관세청, 『최근마약류밀수동향』, 2003. 12. p. 82, 참고, 관세청, 『2003년도 마약류밀수동향』, 2004. 7. p.114. 참조하여 재인용.

〈표 4-4〉 일본세관 마약류 적발량(1995년-2003년)

(단위 : kg)

연도별 마약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년 6월
각성제	kg	13	528	64	544	1,454	886	202	408	430
대마	kg	193	179	220	281	723	485	797	476	275.3
헤로인	kg	4	4	3	4	1	6	5	19	20.9
코카인	kg	22	26	23	16	4	7	18	14	16.9
아편	kg	32	33	12	18	7	5	8	2	5.8
MDMA	정	6,103	14,580	21	11,219	18,287	84,892	117,728	190,280	300,915
향정	千정	63	78	110	136	139	62	90	60	93.732
합계	건 kg 千정	264	770	321	863	2,186	1,389	1,030	919	748.9

자료 : 관세청, 『최근마약류밀수동향』, 2003. 12. p.196. 참고, 관세청, 『2003년도 마약류밀수동향』, 2004. 7. pp.151-153. 참조하여 재인용.

<표 4-5> 우리나라 외국인 밀수사범 적발 (2003년 한해 현재) (단위 : 명)

국 적	이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나이 지리아	태국 중국	카자 흐스 탄	대만 페루	일본	합계
검거수	29	14	13	8	6	6	6	2	2	86

자료 : 관세청, 「2002년도마약류밀수동향」, 2003. 11. pp. 120-122.

<표 4-6> 밀수입 마약류 적출국(2002년) (단위 : 건)

출처국	중국	미국	필리핀	이란	태국	베트남	러시아
건 수	25	5	3	2	1	1	1
출처국	방글라데시	가나	캄보디아	불상	국내인		합계
건 수	1	1	1	2	5		48

자료 : 관세청, 『최근마약류밀수동향』, 2002. 5. p. 115. 참고.

그러므로 이러한 검거사례와 적발량을 보면 마약의 통제에의 시작은 생산지로부터의 초기통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교 채널이 필요하지만 이미 유엔마약위원회 등 협력기관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의 임무인 제배, 제조 및 이용에 관한 통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밀반입 루트에 관한 정부수집에 이용하기에는 아주 미흡하다. 세계적인 밀수조직들의 밀반입량은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생산지로부터의 정확한 생산정보를 획득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를 관리할 생산지 관계국가에 정보수집기관을 개설하고 초기통제관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관계되는 전문 학계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약수사 전

문 민간요원을 양성하고 민간단체에 호르는 정보를 수집하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다. 모든 수사에 적극 가동될 수 있는 수사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정보 능력을 갖추는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제3절 공·항만의 마약수사 강화 정책

마약류의 문제는 유럽의 완화되는 성격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마약의 흐름으로 볼 때 마약의 문제는 이미 어느 한쪽 국가의 문제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관련국가간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 방어의 체제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다. 외국산 마약이 자국에서만 일어난 일이라 밀반입되면서 국제범죄의 조직적인 활동이 더욱 증가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1990년 말 이후 공·항만(空港灣)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양적으로나 발생 건수로 볼 때에 점차 증가하였다. 국내에서 밀거래 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밀수입되고 유통된다는 점에서 볼 때 공·항만의 마약류 밀반입 루트 단속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003년 한해 세관의 검거현황을 보면 <표 4-7>과 같다.

<표 4-7> 세관별 단속실적(2003년)

(단위 : 명)

세 관	인천공항	서 울	부 산	인 천	기 타	계
건수 (%)	38 (53)	21 (29)	6 (8)	3(4)	4 (6)	72 (100)

자료 : 관세청, 『2003년도마약류밀수동향』, 2004. 7. p. 134. 참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들어오는 밀반입이 53%를 차지하고 있다. 공·항

만 경로로 들어오는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은 중국, 필리핀, 태국 등 동아시아 및 유럽, 미주지역에서 연간 500톤 이상이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 중국간 마약밀거래조직, 그리고 중국 “삼합회”, 일본 “야쿠자”, 대만 “죽련방” 조직 등에 의해서 일본, 대만, 한국 등 동북아 및 미주, 유럽 등지로 밀반출 되고 있다. MDMA의 경우는 80% 이상이 네덜란드에서 생산(연간 1,000만정 규모)되어 벨기에 등 유럽전지역, 호주, 미주 및 한국 등 동남아지역에 무차별 공급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산업연수생, 한국관광객 및 내국인의 외국관광 등으로 출·입국이 빈번하면서 입국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밀반입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우편물이 증가하고 그 수단으로 밀수가 단연 부상하고 있다. 1일 40만여 건의 우편물을 감시하는 비율은 10%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최첨단 장비와 지휘소 그리고 예산의 책정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과 서울 세관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요원들이 관세, 외환 사범 적발 등 타 업무에도 겸임을 이제는 구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약단속의 전적 임무를 담당할 독립기구로서의 예산책정과 인력배치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 안에는 인터넷 사이버 거래를 감시하고 정보관리 할 부서를 설치하고 국제우편물의 70% 이상의 샘플 검사를 할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1999년 1월15일 창립한 ‘마약범죄 시민사이버감시단’의 임무는 책상 위의 그림일 뿐 정부차원의 실제적 효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펼쳐야 한다.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의 증가율을 볼 때 더욱 그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제4절 마약학회 시민 정보실운영 정책

우리나라 민간 정보능력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제일의 강국이다. 외국에서 일어나는 마약관련 정보와 여행정보를 통한 국가적

사건의 예를 분석하면 마약정책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뿐만 아니라 민간 학계와 민간 학회 등의 관련 단체와 한국마약퇴치본부 한성대학원 국제마약학회,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의 약물관련학회의 기본적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가 공항만 마약검색의 아이디어 경연을 활용하면 정책시스템에 도움이 된다. 공·항만의 검문검색에는 정보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상시 이용하도록 한다. 인터넷 이용한 관리·분석을 위하여 마약전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국제회의의 마약심포지움과 마약검거사건의 내용을 분석할수록 국내의 밀반입 경로의 시간적·물량적 사전 의식으로 경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객의 투고와 신고의 의식을 고려하여서도 일반 마약관련시민정보실의 운영은 필요하다.

제5절 외국인 마약폐해 상담센터 운영 정책

신종마약을 밀반입하는 방법으로 화물을 통하여 이용한다. 그러나 화물을 이용할 때에는 그 물건을 도난당할 때 신고하는 상담실을 운영한다. 그리고 마약의 병폐와 결과적인 상담을 홍보하는 것이 창구의 임무이지만 외국인의 마약관련 상담을 통하여 국내에 들어온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을 마치고 출국할 때에도 국내의 마약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수사는 진전 될 수 있다. 단지 마약국의 일원이 아니라 마약관련 상담사를 두고 근무케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하여 마약학회와 학계에 마약전문 수사요원과 마약상담사를 양성케 하고 국가의 등용이 있도록 한다. 마약의 특수성과 관련업무의 특수성이 특별 전문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제5장 結 論

마약에 관련하여 위원회를 조직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조치등도 제한적인 차단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공·항만을 통하여 끊임없이 밀반입을 하려는 국제밀매단 조직들의 다양한 수법에 효율적인 단속과 차단대책의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장의 검거수사와 침단의 샘플수사 그리고 최종정보의 분석이 수사현장에서 이용될 때 비로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적인 마약통제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때 공·항만 현장에서는 차단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기틀이 잡힐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마약청정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마약류 밀반입과 마약류 남용의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성실해 보인다.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서 타 국가에 비하여 청정할 만큼 건전한 것은 그만큼 정부의 국민건강과 안보 의식이 성실한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자들이 점차 증가하는데 대한 종합적이고 범국민적인 퇴치활동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999년도 이후로부터 점차 마약류 남용이 확산되고 있다. 마약류 범죄계수가 비등점인 20을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우리 사회가 건전성의 위치를 잃어가고 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의 꿈들이 건강으로부터 위해(危害) 받고 있음을 직시한다면 정부의 마약정책의 새로운 틀과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마약류 거래개입과 국경과 마약범죄조직들의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간의 정보를 가늠해 볼 때 새로운 마약정책의 시급함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의 마약류 통제는 유통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유엔의 국제간의 협약과 그 의무에 기대를 의지하였어

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므로 기존의 통제정책의 포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 통제정책의 실효성을 가져야 할 때인 것이다. 법적, 제도적 방안들이 전문적 위치에서 다양한 모색을 방안하고 그에 따른 인력 양성과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역량부족의 원인인 법적, 재정적, 인력부족의 원인들을 적극 보완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마약류 수사는 역량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신속성 대응을 요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가 급속히 확산되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국제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출입국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밀수조직들의 행동에 대해서 채신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전문적 실무관리 인력과 관계기관의 재정적 조직적 체계의 허술함에서 방관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마약류의 공급가격이 하락하여 접근 가능성이 쉬워졌다는 점이다. 1998년도에 필로폰의 경우 1회 투약분 가격이 10만원 정도였으나 2000년도에 이르러서는 필로폰보다 훨씬 강한 LSD는 2만원, 엑스터시는 5만원, 음료수에 타먹는 일명 ‘물뽕’은 3만원 정도에 유통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늘어난 이유는 우리사회가 사업적 실패와 퇴직강요 소외와 사회적응의 불안적 요소가 내재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약확산으로 인한 폐해가 국민전체로 확산되기 전에 마약류의 밀수와 밀매유통에 대해 현실적 대책으로 수사와 단속이 정책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제13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¹⁰⁵⁾가 2003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 제주 KAL호텔에서 18개국 120명이 참석하여 “마약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결의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이 마약으로 인한 폐해가 확산되고 있음에 대한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 모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검찰청과 경찰청 그리고 마약수사부서의 기능과 그

105)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 Anti-Dro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각 부서의 치밀한 정보교환과 정부기관의 총체적 마약퇴치전략을 수립하여 세부지침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급쇄신을 위하여

첫째로, 마약생산지의 정보를 국제간의 협력을 통하여 국내에서 분석하고 유통의 이동로와 그량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의 쇄신을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가져야 한다. 공조체제를 조직하고 수사력을 강화하면서 공·항만의 감시체계를 위하여 인력관리와 양성 그리고 전자시스템과 정보전산처리를 위하여 기구와 관계부서를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관리할만한 국제공조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함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수요억제정책으로 쇄신하여야 한다. 2003년도 마약류 단속 실적을 보면 337건에 98.5kg 시가1,849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하면 198% 증가한 것이다. 살 빼는 약류 및 마약류정제(복방감초편)의 단속실적을 제외하고도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등 주요 마약류의 검거건수가 72건으로 2002년도 51건에 비하면 41%가 증가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 유혹 예방활동을 하여야 할 만큼 수요억제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마약퇴치를 향한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적극 활용하고 마약학회와 관련전문 양성소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마약이 국제간에 유통되는 거점인 공·항만의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최대 효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공조수사의 확립이 효율적이어야 한다. 국제화 시대에 국제범죄조직 간의 밀수 사건은 날로 확산되고 지능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밀매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공조체계가 필요한 때이다. 단일수사지휘를 받는 것은 신속한 성격을 가지지만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필요할 때에는 더욱 그 신속성에 법적 공안성을 부여해 주어서 최 일선에서 대처하는데 일익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공·항만에 대한 전담마약수사 부서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예산의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강한 마약퇴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조직범죄자들의 각종 폭력적인 무기로 무장한 때라든지 수사기회의 집행을 교묘히 방해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수사장비의 현대화 및 첨단 기구화를 각각 일선 전문요원들에게서 사용되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공조수사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 일시에 차단 수사검거 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는, 마약밀매의 주범적인 국가에 대한 특별한 관리체계와 정보수집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버마, 태국, 북한, 아프카니스탄,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 대량의 마약류와 제조국가에 대한 국가안보의 위협적인 대처 상황으로 철저하게 강화 단속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기구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마약전담부서의 독립과 재정적, 기술적, 전문성 요원의 양성관리가 급선무이다.

마약의 확산은 곧 건강으로부터 죽음의 폐해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마약류가 더 이상 우리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마약류 폐해와 그 결과의 독소(毒素)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약류의 범죄가 조직화, 광역화, 국제화 되어간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신적 건강 의식이 고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이고 성실한 마약정책을 수립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마약으로부터 건강한 나라 한국의 미래를 지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1) 국내 문헌

- 관세청, 『2003년도 최근마약류밀수동향』, 관세청, 2004. 7.
- 관세청, 『근마약류밀수동향』, 서울: 협동문고, 2003. 12.
- 국가정보원, 『국제마약범죄동향』,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 2002.
- 국가정보원, 『마약용어해설』, 2003. 3.
- 대검찰청, 『2003년도 마약류범죄백서』, 대검찰청, 2004. 4.
- 김광일, “마약환자의 생태”, 대학의학협회지, 제10권 제8호. 1999.
- 김상희, 『우리나라 마약류 통제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원, 1992.
- 김창선, “한국마약중독자의 史的考察”, 신경정신의약, 제2권 제1호, 1963.
- 문효남, 『마약류사범의 동향과 대책』, 검찰청. 1998.
- 박희준역, 오오키고오스케, 『마약뇌문명』, 서울:정신세계사, 1991.
- 이재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방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임대환, 『국제마약범죄연구』, 서울: 협동문고. 2002.
- 전대양, 『신종 마약류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003년
- 장영민외, “현행약물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정재웅, “약물범죄의 비교연구”, 석사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83,
- 조성권, “21세기 국가 반마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21세기 한국 마약정책의 새
방향, 한성대학교국제대학원.
- 조선훈, 『세계의 조직범죄』, 서울 : 청목사, 1994.
- 조은석 외2, 『마약류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서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1.

2) 국외 문헌

Alarcon, R. De., “The Spread of Heroin in a Community” , U.N. Bulletin of Narcotics, 1989.

David F. Musto, The American Disease Origin of Narcotic Control, N.Y.: YaleUniv, press, 1973.

Franklin E. Zimring & Gordon Hqwkins. 「The Search for Rational Drug Control」 , Gilmore(ed.), International Efforts to Combat Money Laundering, Cambridge Grotius Publications Ltd., 1992.

Nilson, H. G., The Council of Europe Laundering Convention; A Recent Example of a Developing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 :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a New Transnational Criminal Law, 1992,

The Hongkong Action Committee against Narcotic, Narcotics Report:1992,.

3) 인터넷 사이트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po.go.kr/drug>)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http://www.drufree.or.kr>)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홈페이지(www.daugcci.co.kr)

ABSTRACT

A Study on Korean Drug Policies toward the Growth of International Drug Trafficking of the 21st Century - A Focus on Control Policies of Drug Trafficking -

Bae, Soung-Ta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Narcotic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ung University

It is astonished that the total amount of illicit drug trafficking, ie. 500 billion dollars, is nearly 9% in the volume of world trade. In this point, the issue of drug in Korea is also rising as one of major issu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with globalization in the 21st centur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of drug,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some of realistic policy implications, which concentrate on interdiction policies in both airport and harbors in Korea.

To do these, first, the chapter I addresses the level of analysis as well as methodology. The chapter II explains various types of drugs including new drugs in the 1990s and the main producing states of drugs.

The chapter III discusses the key international drug control regimes. In

addition, this paper compares drug control policies of some countries such as US, Japan, Netherlands, UK, and Canada. The chapter IV suggests a new direction of Korean drug control policies for the 21st century.

This paper offers, in particular, some polici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e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event from drug smuggling, the initial interdiction system in the producing regions of drugs, and the training of the professional officers for drug investigation, and the set-up of drug counselling office for foreigners, etc.

The final chapter as the part of conclusion points out the necessity of the consensus and conscience of peoples for keeping away drug abuse. The government also has to try efforts in the governmental level to collaborate with civil society, drug exports, drug associations of scholars, etc.

碩士學位論文

國際麻醉類

확산에

따른

21세기

韓國麻藥政策에

관한

研究

2004

裴
成
泰